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 연구

2021. 2.

## 연구수행기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연구책임자: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연 구 원: 김민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김 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수연(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최초록(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목차]

I. 연구 배경 및 방향

II. 연구 범위 및 분류기준

1. 연구범위 및 대상
2. 선행연구와 비교
3. 공익 진로의 분류 기준 및 정의

III. 연구 방법

IV. 예비 법조인을 통해 살펴본 공익 진로 욕구와 현황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3. 심층면접조사
4. 소결

V. 미국 로스쿨의 공익변호사 지원 양성 제도

1.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
2. 공익전담 펠로우십 제도
3. 공익법센터
4. 공익 진로 매뉴얼
5. 멘토링 프로그램
6. 기타
7. 소결

VI. 한국 공익 진로 현황 및 진로 개발 관련 프로그램

1. 한국 공익 진로 현황
2. 공익 진로 활동 내용
  - 가. 비영리단체 소속 변호사(다양한 비영리 공익기관)
  - 나. 법령 등 위탁단체
  - 다. 영리와 공익 병행 모델(영리/수익 모델)과 노동조합 변호사
  - 라. 국선변호사

마. 법률홍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3. 공익 진로 개발 관련 프로그램·활동 현황

가. 공익 진로 관련 실무수습

나. 공익활동 공모전

다. 공익 진로 관련 기금

라. 기타 프로그램

마. 소결

## VII.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별첨자료

- 별첨자료1: ‘공익적 법조 진로’ 관련 설문조사 설문지 (예비 법조인 대상)
- 별첨자료2: ‘공익적 법조 진로’ 관련 설문조사 설문지 (신입 변호사 대상)
- 별첨자료3: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예비 법조인)

## I. 연구 배경 및 방향

변호사는 법의 보편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매개(혹은 집행)하는 직업이다.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 법정 안팎에서 법률사무를 독점하고 제도적으로 그 독점을 보장받고 있다. 사회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그 독점 체제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변호사의 숫자가 대폭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 독점적 지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대가로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부담해야 필요가 있다.<sup>1)</sup> 이러한 고려에서 2000년 전면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면서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sup>2)</sup>

1990년 중반까지 대체로 변호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혹은 자신이 자문을 하게 된 비영리단체가 제안하는 소송(소송 당사자가 취약한 경우일 수도 있고, 소송 내용이 기획소송일 수도 있음)을 통해서, 지방변호사회 등의 회무를 통해서 자신의 본업 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공익활동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비영리영역 자체가 꾸준히 확장되었다.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동시에 시민사회 운동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법률동원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변호사의 활동영역 또한 시민사회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변호사로 일하는 경우가 생겨났으며 변호사로서의 출발 내지 저년차 때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익법률활동을 전업으로 삼아 경력을 시작하는 사례가 나타났다.<sup>3)</sup> 그리고 2003-2004년 공익변호사 타이틀을 전면에 걸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등장하였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로펌에서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공익전담변호사를 채용하기 시작하였다.<sup>4)</sup>

현재는 다양각색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부동산과 관련한 특수한 법률에의 수요 및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노동 등 노동 시장의 다변화와 관련한 라이더 유니온과 청년유니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모색, 소액주주 운동을 통한 기업 감시, 코로나로 인권 침해 대응 등 수시로 변화하는 시대에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목소리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

1) 차병직,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의 근거와 범위-왜 가끔 착한 사마리아 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2008), 188.

2) 구 변호사법,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시행 2000. 7. 29.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2000. 6. 26. 제정

3) 1999년 민주노총 금속법률원(김기덕), 참여연대(하승수, 이상훈) 2000년 환경운동연합(여영학), 민주노총(권두섭)

4) 2016. 제3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자료집, 김준우 발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00년 후반부터 공익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숫자, 활동영역, 활동방식도 확장되고 다변화되어 현재는 120여명의 공익변호사들이 인권 일반, 장애, 아동, 난민, 소비자, 환경, 사회적경제,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동물권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일 하고 있다.

「2019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에서는 공익전업변호사들의 존재지반에 따른 특성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sup>5)</sup> 한편 공익변호사들의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해온 법조공익모임 나누는 2019년부터 공익변호사들의 공익변호활동을 알리기 위한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여 공익변호사들의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는 여러 가지 실무 매뉴얼들을 발간하여 노인, 장애, 이주노동 등 개별 분야에서 공익변론 실무 노하우를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대체로 현재 공익변호사들로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들의 현황에 대한 것이거나 공익변론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다. 막상 이 공익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법조인’ 입장에서는 공익 진로와 관련하여 얼마나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졸업 후 진로를 모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들(특히 채용 및 업무방식과 관련한)과 기존의 자료들은 다소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요청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공익 진로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고, 예비 법조인들이 하고자 하는 공익 진로는 무엇인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자체가 그 동안 진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먼저 공익 진로에 관심 있는 예비 법조인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위해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보고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취합하고자 한다.

---

5)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사단법인 두루,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2019).

## II. 연구 범위 및 분류기준

### 1. 연구 범위 및 대상

이 보고서는 예비 법조인을 위하여 쓰여진다.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후 공익 진로 매뉴얼 제작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 1) 먼저, ‘공익 진로’로 분류될 수 있는 ‘공익’은 무엇인가

‘공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사람마다의 가치관 및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독일과 영미권에서 ‘공익’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은 독점 자본주의에 의한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가 주도하는 사적 시장 경제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공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주장되면서 공익법 운동 등이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그 논의가 활발해졌다.<sup>6)</sup> 한국에서 공익(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인데, 황승흠 교수는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잘게 쪼개져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이 공익’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sup>7)</sup> 한편, 미국 마케트 로스쿨에서 발간한 공익법진로가이드에서는 공익 진로의 범주를 통해 공익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데 “기존 법률시스템에서 의미 있게 대변되지 못한 개인들과 대의명분들을 위한 공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직업(public interest employment encompasses public service orientated work on behalf of individuals and causes that otherwise lack meaningful representation in the legal system)”으로 정의하고 있다.<sup>8)</sup>

2) 흔히 공익이라고 하면 돈을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무료 혹은 저가의 수입료를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법률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사법접근성과 관련한 것이며 이 부분은 기존의 여러 가지 소송구조 제

6) 최송화, “공익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38-339. 차병직, 위 논문, 193-194.에서 재인용

7) 황승흠,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 조영래 변호사 8주기 추모 심포지엄 자료집(미간행), (1998), 2-3.

8) "Guide to Careers in Public Interest Law",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Career Planning Center,  
<https://law.marquette.edu/assets/career-planning/pdf/Public-Interest-Guide.pdf>

도를 통하여 수요자가 접근 가능하고 이를 수행하게 될 변호사가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장치들이 고안되었다. ‘공급자인 변호사 입장’에서 어떠한 주제와 방향을 모색하며 법조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한 접근이 아닌 것이다. 즉, 공익 진로에 있어서 공익은 단순히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공익 진로’라고 할 경우 ‘공익’의 범위는 사법접근성 차원으로 한정짓기는 어렵다. 사법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은 소송구조 제도 활성화, 마을변호사(전업이 아님) 제도 활성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이는 하나의 제도일 뿐 ‘진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익 진로를 이야기할 때 공익의 범위는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 더 넓은 틀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공익의 범위를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고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 하였다. ‘진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를 ‘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소송구조나 위원회 제도들은 소개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개업변호사로서 본업이 따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공익 진로에 있어서 ‘공익’의 의미는 아래 ‘3. 공익 진로의 분류기준 및 정의’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진로’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익’의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 2. 선행연구와 비교

### 가. 2019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와 비교

100여 명이 넘는 공익전업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였다. 예비 법조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아니었기에 예비 법조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2019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는 공익전업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사된 것이어서 이 연구에서 설정된 ‘공익 진로’의 범위를 포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공익의 범위도 다양하고, 그 공익 목적을 실행해가기 위한 방법도 영리 모델, 비영리 모델, 병행 모델, 제3모델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 나. 2019, 2020 공익변호사 활동보고서와 비교

여러 방향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의 활동 주제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예비 법조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활동 방식(채용, 사건 선임 방식, 업무 방식)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역시 주로 공익전업변호사들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 다. 기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2년 사법지원센터설립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sup>9)</sup>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법지원을 더 확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연구로 국내 법률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공익변호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수요자를 위한 시각에서 기술되어서 예비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데다가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익 진로 혹은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법률구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다변화된 공익 진로 활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프로보노 매뉴얼 시리즈<sup>10)</sup>를 제작하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대응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매뉴얼을 기술한 것이므로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 진로 모색에 대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공익 진로의 분류 기준 및 정의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각자의 기준은 모두 다르다. 그 논의들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합의점은 광범위 하고 다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정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논의들은 대부분 ‘공익’의 의미와 관련한 것이었고, ‘진로’의 관점에서 재분류된 것은 아니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는 예비 법조인들을 위한 공익 ‘진로’와 관련한 것

9)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지원센터설립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 (2012).

10)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직장 갑질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장애인 학대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NPO 법률지원 매뉴얼,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이주민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난민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등  
probono.seoulbar.or.kr 사이트에서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분하게 흩어져 있던 ‘공익’의 분류를 ‘진로’의 관점에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한국에서 공익 ‘진로’의 관점 혹은 공급자의 관점에서 공익의 개념을 분류한 시도는 여러 해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시도 중 가장 최근의 시도들인 「2019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의 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 기존의 공익 진로 분류 - 2019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 실태조사에는 ‘공익’에 대한 의미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공익변호사의 ‘활동’의 특성(‘존재지반’이라고 표현함)에 중심을 두어 분류를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익변호사란 ‘영리적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익적 성격의 사건을 주되게 수행하는, 위와 같은 지향을 위해서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사에서 공익변호사란 그 활동 방식에 있어 비영리조직에서 전업으로 상근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지원으로 인한 수익구조를 아예 가지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거나, 상한 이상의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적인 지향을 위해 (거의)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고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sup>11)</sup> 여기서 ‘존재지반(활동 방식)’이란 ① 공익변호사단체(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익법인 등)를 직접 만들어서 활동하거나, ② 시민사회단체 상근변호사로 일하거나, ③ 지방자치단체 위탁 법인 소속 기관에서 일하거나, ④ 개인이 개업했지만 공익적인 사건을 주로 병행 하거나, ⑤ 민주노총법률원처럼 법무법인이지만 노동조합 관련 사건만 하는 방식을 의미하면서, 재정/소득 구조에 따라 각각 ① 시민들로부터 후원, ② 로펌의 후원, 후원+법률사무소 수입, 법률사무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로 나누는데, 활동방식과 재정 소득 구조에 따라서도 변호사 활동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 보고서의 분류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다양한 존재지반에 따른 공익변호사 현황(2019. 6. 기준, 휴직자 및 외국변호사 포함)<sup>12)</sup>

설립주체/단체분류	단체명 <sup>13)</sup>	지역	번호	주요 활동영역	설립/비고
-----------	--------------------	----	----	---------	-------

11)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16-17.

12)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17-20.

13) 가나다 순

				사 수		
변호사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서울	5	난민, 구금이주민, 인신매매,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2011. 1.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	3	장애, 이주와 난민, 여성, 성소수자 등	2015. 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	11	여성, 장애, 이주와 난민, 빈곤 복지, 취약노동, 성소수자 국제인권	2004. 1. 중간지원 14)
		공익인권변호사모 임 희망을만드는법	"	9	기업과 인권, 표현의자유, 성소수자, 장애	2012. 2.
		녹색법률센터	"	1	환경	1999.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5.515)	민주, 인권 전반	1988. 5. 변호사 회원 1200명/ 위원회 구조
		법조공익모임 나우	"	1	공익변호사 지원	2013. 12. 중간지원
		사랑샘재단	"	1	공익변호사 지원	2012. 2.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7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2014. 12.
		이주민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	2	이주민 인권	2014. 3.
	장애인권법센터	"	1	장애	2017. 1.	
	환경법률센터	"	1	환경	2001. 2.	
	일반변호 사 업무 병행 <sup>16)</sup>	원곡법률사무소	경기	5	이주민, 장애, 국가폭력, 민생경제	2012. 5.
	노동	법무법인 여는 (민주노동법률원)	서울 충청 광주 등	34	노동	2002. 2.
	로펌이 후원하여 설립된 공익단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	3	장애, 아동청소년, 여성인권, 다문화, NPO	별도의 법인/단체 설립하지 않음
		법무법인 동인	"	1	아동청소년, 난민, 이주민, 장애, 홈리스	"
		법무법인 디라이트	"	1	장애, 국제인권(이주민/난민), 여성, 환경, 아동청소년	"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	1	탈북민, 아동청소년, 봉사활동, 공익단체	2014. 9.

					지원	
		사단법인 두루	"	7	장애, 아동청소년, 사회적경제, 난민, 이주외국인, 국제인권	2014. 9.
		사단법인 선	"	1	생태, 사회적경제, YOUTH, 여성, 국제, 후견	2013. 12.
		사단법인 온을	"	3	성년후견, 공익법제, 의사결정능력장애, 기초법, 신흥지역, 청소년교육, 범죄피해자	2014. 3.
		사단법인 정	"	1	디지털 소외, 난민, 탈북민, 청소년, 사회적 의인, 법인후견인	2017. 9.
		재단법인 동천	"	6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 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NPO법률지원	2009. 6.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	2	한센인권, 홈리스, 노동, 이주민, 청소년, 남북교류, 해외입양인	2014. 12.
활동가 중심 공익단체	시민 후원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	1	아동 인권 옹호	2011. 4.
		난민인권센터	"	1	난민 인권 옹호	2009. 3.
		동물권단체 케어	"	1	동물권	2002. 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1	직업병 피해 노동자 인권 옹호	2007.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1	교육 문제	2008. 6.
		사단법인 오픈넷	"	2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망 중립성 등	2013. 1.
		아시아의 창	경기	1	이주인권 옹호	2008. 3.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서울	2	아시아분쟁 피해자, 현장활동가 지원	201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울	1	아동권리 신장	1994.
		이주민센터 친구	"	2.5	이주인권옹호	2011. 12.
		참여연대	"	1	사법감시, 의정감시, 공익제보지원, 행정감시, 경제금융, 노동, 민생, 사회복지, 조세재정, 평화, 국제연대	1994. 9.
		법령 등 위탁단체	경기도장애인권익 옹호기관 <sup>17)</sup>	경기	2	장애인 권익옹호

	(재원이 보조금 혹은 기금)	경기북부장애인권 익옹호기관	경기	1	장애인 권익옹호	2016. 12.
		서울사회복지공익 법센터	서울	3	복지 문제	2014. 4.
		장애인권익옹호기 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	3	장애인 권익옹호	2018. 1.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sup>18)</sup>	"	1	아동 인권옹호	2001. 10.
		중앙장애인권익옹 호기관 <sup>19)</sup>	"	1	장애인 권익옹호	2017. 1.
		한국소비자단체협 의회	"	2	소비자 권익	1976. 4.
기타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	1		2017.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2		2019.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sup>20)</sup>	"	1		2012.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	1		2016. 4. 공익변호 사 양성, 중간지원

그러나 위 연구는 공익전업 혹은 공익전업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변호사로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 나. 공익 진로 분류에 대한 다른 견해

김주영 교수는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 진로 개발 내지 진로 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예비 법조인들의 공익 진로 개발 지도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기 위해서는 공익 진로의 범주를 가급적 폭넓게

14) 공익변호사 중간지원조직을 의미한다.

15) 이하 0.5는 반상근

16) 이 조사에서 말하는 공익변호사는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손익 분배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법률사무소의 활약도 두드러지며, 대표적으로는 법률사무소 보다(인권법센터 보다), 법률사무소 이음, 법무법인 자연, 법률사무소 휴먼, 제주법률사무소 진솔 등이 있다.

17)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운영

18) 굿네이버스가 위탁·운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 7.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흡수되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1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운영

20) 다른 대학교의 인권센터에도 상근변호사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익변호사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익 진로를 분류하고 있다.<sup>21)</su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수입료를 받는 사건은 수입하지 않고 주로 개인과 단체의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조직 공익전담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공익법률사무소(공감, 어필, 희망법, 동천, 선 등)</li><li>② 활동가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상근변호사(난민인권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 참여연대, 아시아의 창, 아디, 오픈넷 등)</li><li>③ 국선전담변호사</li><li>④ 정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포함)</li><li>⑤ 민간공익로펌(private public interest firms, PPILFs) - 영리를 추구하지만, 영리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법률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돕는데 주안점을 둔 로펌을 의미</li></ul> |
|---|

①, ②번 분류는 비영리단체이나 그 단체를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는가, 활동가가 중심이 설립되었느냐에 따른 종전은 2019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와 맥락이 비슷하다. 이 논문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정부기관을 공익 진로에 포함시키고 특히 미국로스쿨에서 말하는 민간공익로펌을 공익 진로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다르다.

#### 다. 미국 로스쿨들의 분류기준

한국은 미국과 인구 수와 정부체제,<sup>22)</sup> 사법제도가 다르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역사가 짧고 무엇보다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정식 변호사로 등록할 수가 있으며, 변호사 시험 자체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로스쿨과 동일한 관점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로스쿨과 관련하여 더 오랜 경험이 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공익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 이를 참조해볼만 하기에 미국 로스쿨 중 몇 군데의 기준도 함께 살펴본다.

21) 김주영,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 서울대학교 『공익과인권』 통권 제 20호, (2020), 313-314.

22)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별로 독립된 주권국가와 마찬가지로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모든 주의 법들이 다르다. 또한 미국은 contingency fee, class action(집단소송) 제도가 있으므로 변호사 시장의 환경 자체가 한국과 다르다.

<하버드 로스쿨의 공익 진로 안내><sup>23)</sup>

- ① 검찰(prosecuting offices)
- ② 국선변호사(public defender offices)
- ③ 정부기관(Government)
- ④ 국제공익변호사(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lawyer)
- ⑤ 노동조합 변호사(labor union)
- ⑥ 비영리단체 소속 변호사
- ⑦ 민간공익로펌(private public interest firms, PPILFs)

<예일 로스쿨의 공익 진로 안내><sup>24)</sup>

- ① 연방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주정부 및 지방정부(State and Local Government)
- ② ACLU(미국시민자유연맹)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기관(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 ③ 국선변호사(Public Defenders)
- ④ 국제 기구 및 해외 공익기관(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Abroad)

<스탠포드 로스쿨의 공익 진로 안내><sup>25)</sup>

- ① 비영리기관
- ② 정부
- ③ 민간공익로펌

<콜롬비아 로스쿨의 공익 진로 안내><sup>26)</sup>

- ① 민간영역경력(private sector career)
- ② 공익 또는 공공서비스 경력(public interest and public service career)
  - 정부기관/검찰
  - 국선변호사
  - 비영리기관
- ③ 학계 경력(academic careers)
- ④ 로클럭(judicial clerkships)

23) “Public Service Practice Settings” Harvard Law School,  
<https://hls.harvard.edu/dept/opia/what-is-public-interest-law/public-service-practice-settings>

24) “Public Interest Employers”, Yale Law School,  
<https://law.yale.edu/studying-law-yale/areas-interest/public-interest-law/about-public-interest-law/public-interest-career-services/public-interest-employers>

25) “Postgraduate Entry-level Public Interest Employment List”, Stanford Law School,  
<https://law.stanford.edu/levin-center/postgraduate-entry-level-public-interest-employment-list/>

26)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Columbia Law School,  
<https://www.law.columbia.edu/areas-of-study/social-justice-and-human-rights>

대체로 영리/비영리 여부, 정부/민간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으나 각 구분이 동일하지는 않다. 또한 실제 변호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도 시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탠포드 로스쿨의 경우 졸업 이후 진입할 수 있는 공익 진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비영리, 정부, 민간공익로펌으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로스쿨 생들을 위한 공익 직무 실제(public interest law practic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 진로와 그 일하는 방식이 혼재된 분류이기에 다른 분류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sup>27)</sup>

- ① 비영리 자문서비스(non-profit direct services),
- ② 비영리 기획소송(non-profit impact litigation),
- ③ 정부관련 실무(civil governmental practice),
- ④ 형사 실무(criminal practice),
- ⑤ 민간 공익로펌(private public interest law firms),
- ⑥ 국제공익실무(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이렇게 공익 진로의 구분에 있어, 일하는 기관에 따른 구분과 일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이 다양하고 두 가지 구분이 서로 혼재하는 것은 공익 진로의 범위가 다양하고, 기존의 예비 법조인에 대한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즉,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않는, 교과서로는 정형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된다. 스탠포드 로스쿨 레빈 공익법센터의 홈페이지에도 공익법 실무가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법이 아닌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내용은 미국의 다른 로스쿨들의 매뉴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단 스탠포드 로스쿨의 분류와 설명에 대해 옮겨본다.

**공익법 실무 정의<sup>28)29)</sup>**

변호사는 공공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적인 실무(practice setting) 방식으로 일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이 대체로 법률 실무 훈련, 분석 기술 및 작문 능력을 활용하여 (기존 법조영역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 덜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다른 여러 비 법적 기술(법이 아닌 기술)을 요구하며, 자주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7) <https://law.stanford.edu/levin-center/careers/#slsnav-overview-3>

위 각주 25번과 비교.

- 비영리 단체의 집행부 (또는 법학 학위가 있는 후보자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역할)로  
서 일하는 방법
-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  
하는 방법
- 입법 대리인 사무실(국회 보좌관 등)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의 직원으로서 정책 변경을  
제안하는 곳에서 일하는 방법
- 공무원으로 일하는 방법(선출 또는 임명 여부에 관계없이)
-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론 대응을 하는 방법

미국 로스쿨들 중 일부는 공익 진로를 설명하면서 민간공익로펌을 포함하기도 하  
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마.항에서 더 자세  
히 논하겠다.

#### 라. 이번 연구에서 공익 진로의 범위 - 공익 진로 분류 방법의 고민

1)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과 공익 진로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있는 가운  
데, 이번 연구에서는 ‘진로’에 집중하면서 그 ‘진로’를 주제별로 구분할 것인  
가, 일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한편, 이 연구조사의 목적은 ‘예비 법조인’에게 공익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리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고, 예비 법조인들에게 공익 진로라는 것은 한편으

28) 위 각주 27번 사이트 참조

#### 29) Defining Public Interest Law Practice

There are six primary practice settings where lawyers can work in the public service and  
are discussed generally below. Yet students should be aware that *there are many lawyers  
working in public service but in less traditional roles that capitalize on their legal training,  
analytical skills, and writing ability. These roles may rely on a host of other non-legal skills  
and oftentimes do not arise from taking a predictable path.*

Some examples might be:

- *Serving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other roles that are not limited to candidates  
with law degrees)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or philanthropic foundation*
- *Working to implement programs at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does not provide legal  
services to clients*
- *Proposing policy changes as a staff member of a legislative representative's office or  
other governmental entity*
- *Serving as a public official (whether elected or appointed)*
- *Reporting on legal issues for a media outlet*

로는 ‘직장’ 으로서 어떠한가가 궁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예비 법조인인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sup>30)</sup> 그런데 아직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며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 연구는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아래의 표를 통해 공익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와 이를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몇 가지 주제 별로 무엇을 하고 싶은 주제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길들이 있는지, 각 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2] 주제 별 공익 진로 모색 방법과 장·단점

바꾸고 싶은 주제 (예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변호사로서)	그에 따른 장·단점 <sup>31)</sup>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	개인법률사무소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장애 관련사건만 한다. (예: 장애인권법센터)	장점: 장애 이슈만 다루어 전문성을 쌓는다.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단점: 수입이 불확실하여 지속가능하지 않다. 혼자서는 소진되어 지속가능하지 않다. 혼자 업무를 하는데 물어보고 상의할 동료가 없다. 신입변호사라면 개인법률사무소로 개업을 하는 것이 부담된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법률경험을 쌓기 어렵다.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
	이 문제를 다루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 채용되어 일반 사건도 하고 장애차별 관련 사건도 한다. (예: 법무법인 디라이트 등)	장점: 동료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초기비용이 덜 든다. 다양한 유형과 내용의 승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단점: 이런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찾기 어렵다. 다른 일반 사건(비공익)을 병행하기 때문에 공익사건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어렵다.

30) 위 Yale Law School, 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Law

		수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고정 비용이 많이 든다.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
	이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법령 위탁단체 포함)의 상근변호사가 된다. (예: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법연구회 등)	<p>장점: 소송 이외에 역동적인 다양한 일을 기획, 실행해볼 수 있다. 특히 송무 이외의 활동(입법운동,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다. 이 문제만을 다루어 전문성을 쌓는다. 동료가 있다. 초기비용이 적게 든다. 조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p> <p>단점: 변호사 업무 이외의 일도 해야 한다. 변호사인 동료 활동가가 없다면 법률 영역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어려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p>
	이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모델의 변호사단체를 만들거나 채용되어 활동한다. (예: 공감, 희망법 등)	<p>장점: 이 문제만을 다룰 수 있고 변호사들끼리 모여있기에 법률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동료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적 부분에만 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p> <p>단점: 펀딩, 홍보 등 변호사 업무 이외의 일도 해야 한다.</p>
사법감시, 예산감시를 해서 시민민주주의를 이루어지도록	개인법률사무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끔 한다.	<p>장점: 동료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초기비용이 덜 든다. 다른 사건에 송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p> <p>단점: 이런 법률사무소/법인을 찾기가 어렵다. 다른 사선 사건을 병행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어렵다. 선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고정 비용이 많이 든다.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p>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법무법인/개인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고용변으로 일한다	<p>장점: 초기비용이 적게 든다. 선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p> <p>단점: 공익사건 이외의 사선 사건도</p>

	(법무법인 공존 등)	병행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의 상근변호사가 된다.	<p>장점: 이 문제만을 다루어 전문성을 쌓는다.</p> <p>송무 이외의 활동(입법개정 운동,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다.</p> <p>동료가 있다.</p> <p>초기비용이 적게 든다</p> <p>조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p> <p>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p> <p>소송 이외에 다양한 일을 기획 실행해볼 수 있다.</p> <p>단점: 변호사 업무 이외의 일도 해야 한다.</p> <p>변호사인 동료 활동가가 없다면 법률 영역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어려워 외로울 수 있다.</p>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굴	이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상근변호사가 된다.	<p>장점: 전문성이 강화된다.</p> <p>송무 이외의 활동(입법개정 운동,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다.</p> <p>단점: 변호사 업무 이외의 일도 해야 한다.</p> <p>변호사인 동료 활동가가 없다면 법률 영역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어려워 외로울 수 있다.</p> <p>주로 자문에 집중하게 된다.</p>
	법률사무소/로펌에서 일하며 이 주제를 병행한다.	<p>장점: 다른 주제에 대한 사건 경험도 함께 할 수 있다.</p> <p>단점: 선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p> <p>다른 사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만 집중하기 어렵다.</p>
기후 변화	법률사무소/로펌에서 일하며 이 주제를 병행한다. (예: 법무법인 자연)	<p>장점 : 별도의 재정수입원이 있다.</p> <p>단점 : 다른 사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만 집중하기 어렵다.</p>
	이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상근변호사가 된다 (예: 녹색법률센터, 환경법률센터)	<p>장점: 전문성이 강화된다.</p> <p>송무 이외의 활동(입법개정 운동,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다.</p> <p>단점: 변호사 업무 이외의 일도 해야 한다.</p>

	직접 관련 단체를 만든다 (예: 기후솔루션)	장점 : 관련한 자원들을 연결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지구력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점 : 단체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후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변호사 업무 이외의 일도 해야 한다.

각 문제(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조직구조(영리/비영리)를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제는 다르더라도 그 조직구조를 무엇으로 선택하여 일을 하느냐(비영리, 영리)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인 변호사의 커리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제는 다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반복된 경향을 보이며 그에 따른 장·단점도 각기 다르지만 공통분모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장·단점들은 결국 공익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장·단점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단 조직구조(비영리, 영리) 및 재원의 출처(민간, 정부위탁, 시민후원, 로펌후원)에 따라 구분을 하여 그 특성들을 먼저 나열하고, 나중에 주제별로 안내를 하려 한다.

한편, 예일대 로스쿨의 경우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훈련 방식이 달라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훈련 영역을 찾을 때는, 당사자들(다수인가 개별 한 명인가), 권리옹호 유형(소송 중심인가, 공동체 중심 법률교육인가, 입법운동인가 아니면 혼합형인가), 그리고 위치(보복 없이 공개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요구하는 역량도 다르다. 현장활동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집행부(headquarters)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의 경력이 활동가일 수도 있고 연구자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입법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공익변호사 진로 선택에 있어)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의 중간에 있을 수 있나?  
(비영리)공익 진로에 있어 어떤 것도 전형적인 길은 없다.... 그런데도 개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역량 - 국제법 지식, 헌신과 관심 증명(demonstrated, truly interested), 언어능력, 국제 경험, 관련 직종 경험(꼭 있을 필요는 없고)이다.<sup>32)</sup>

31) 제시된 각 진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연구진의 경험, 주관에 따라 해석되어 작성될 수 있음을 밝힌다.

32) Yale Law School, 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Law

2) 미국 로스쿨들의 사례 및 그 사례를 참고한 김주영 교수의 관련 논문처럼, 영리로 운영되는 민간공익로펌을 공익 진로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이번 연구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고민이 있었다.

의뢰인으로부터 수입료를 받으며 소송·자문을 수행하지만 노동, 환경 등 특정한 전문 분야의 약자나 피해자 또는 공익단체를 대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공익 진로 모색’에 있어, 조직형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한 사람들이 선택한 수단인 측면이 강한데, 이 수단을 ‘비영리’에 한정하는 것은 ‘공익 진로’에 대한 상상력을 막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민간공익로펌/법률사무소도 포함하여 살펴보려 한다. 다만 그 한국에서는 아직 민간공익로펌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어느 곳을 민간공익로펌/법률사무소로 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세 곳의 사례를 통해서만 민간공익로펌으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공익 진로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4. 연구의 한계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이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sup>33)</sup> 이 연구에서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에 관하여 무엇을 궁금해 하는 지를 알아보는 조사에 집중하였다. 예비 법조인이 공익 진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남겨, 이후 각 공익 진로별 매뉴얼 개발에 있어 참고가 되는 밑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이자 한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익 진로 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며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향후 연구과제 혹은 제안과제로 남겨둔다.

---

33) Yale Law School, 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Law

### Ⅲ. 연구방법

#### 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1) 예비 법조인 대상

###### ■ 설문조사

- 조사 기간: 2020. 12. 23. (수) ~ 2021. 1. 21. (목) (4주간)
- 조사 대상: 2021. 1.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법률가
- 분석 대상: 총 33명  
20대가 63.6%(21명), 30대 36.4%(12명)  
현재 거주 지역 서울 72.7%(24명)전라도가 12.1%(4명), 경상도와 제주도 각각 6.1%(2명), 경기도가 3%(1명)

###### ■ 심층면접

- 조사 기간: 2020. 12. 23. (수) ~ 2021. 1. 11. (월) 중 3회
- 조사 대상: 2021. 1.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법률가
- 분석 대상: 12명 (학교 분포: 수도권 8명, 비수도권 4명)

##### 2) 신입 변호사 대상(경력 2년 미만 공익전업변호사)

###### ■ 설문조사

- 조사기간 : 위와 같음
- 조사 대상 : 경력 2년 미만 공익전업 변호사
- 분석 대상 : 10명  
30대가 80%(8명), 20대가 20%(2명)  
9명 수도권, 비수도권 1명

###### ■ 심층면접

- 분석 대상 : 3명

#### 나. 문헌연구

###### ■ 국내

공익변호사 한마당 발제자료,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공익변호사 보고서, 공익 진로 관련한 김주영 교수의 최근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고, 이외에도 공익의 의미, 공익변호사의 분류와 관련한 자료들을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각 공익 진로 분야의 변호사들의 활동방식을 수집하기 위하여 별도로 온라인 리서치를 병행하였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온라인 리서치와 별개로 추가 면접 조사가 필요하나 이번 연구에서는 예비 법조인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조사하여 이후 세부 공익 진로 매뉴얼 제작을 위한 밑자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연구 시간상의 제약이 컸기 때문에(연구 기간 2개월), 더 나아가서 살펴보지 않았다.

#### ■ 해외

미국 각 로스쿨의 홈페이지를 주로 참조하여 공익 진로와 관련한 정보 및 공익 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홈페이지 이상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서면 면접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위 국내 문헌 조사와 같은 한계로 더 나아가 살펴보기 어려웠다. 다만 실제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의 펠로우십 제도를 통해 공익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미국의 변호사와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 IV. 예비 법조인을 통해 살펴본 공익 진로 욕구와 현황

### 1. 조사 개요

본 실태조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공익적 법조 진로를 고민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실제 일을 하게 될 공익 진로 현장에 대하여 궁금한 정보가 무엇인지, 공익 진로로 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진입장벽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 예비 법조인 당사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공익 진로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 연구는 이와 같이 예비 법조인의 다양한 공익 진로에 관한 욕구를 확인하되,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공익적 진로에 진입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익 진로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예비 법조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공익 진로 매뉴얼 내지 가이드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추가적으로 경력 만 2년 미만의 공익(전업)변호사를 대상으로 예비 법조인과 유사한 내용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즉, 공익 진로에 갓 진입한 시점에서 좀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질문하고, 예비 법조인의 답변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그 간극을 줄여보고자 하였다.

### 2. 설문조사

#### 가.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0. 12. 23. (수) ~ 2021. 1. 21. (목) (4주간)
- 조사 대상: 2021. 1.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법조인
- 분석 대상: 총 33명

짧은 연구기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보완하려고 노력했음을 밝힌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예비 법조인들은 대부분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진행

되는 실무수습에 참여한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공익적 진로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상이라는 점도 결과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력 2년 미만의 공익전업변호사(이하 ‘신입변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명이 응답하였다. 공익 진로를 ‘고민’ 하는 예비 법조인과 이미 공익 진로에 ‘진입’한 법률가 간의 공익 진로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 나. 조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및 공익 진로 배경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 사항으로는 연령과 현재 거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 공익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도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공익 진로 활동 경력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과 재학 중으로 시기를 나누어 질문했다.

두 번째 부분은 공익 진로 관련 정보에 관한 현재를 진단하는 내용이다.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 출처, 공익 진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아쉽거나 좋았던 점에 대한 설문을 구성했다.

세 번째 부분은 향후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질문했다. 매뉴얼·가이드에 담은 내용을 고려하여, 공익 진로에 대하여 궁금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공익 진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및 향후 진로를 구분하여 질문), 공익 진로를 막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문항을 구성했다.

이러한 설문구성방식은 심층면접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와 연계하여 예비 법조인의 공익적 진로에 대한 욕구를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다. 조사 결과<sup>34)</sup>

### 1) 일반적 사항

34) 이번 설문조사는 구글 독스를 활용해 진행하였고, 관련 요약 표를 그대로 이용하여 기재하였다.

가)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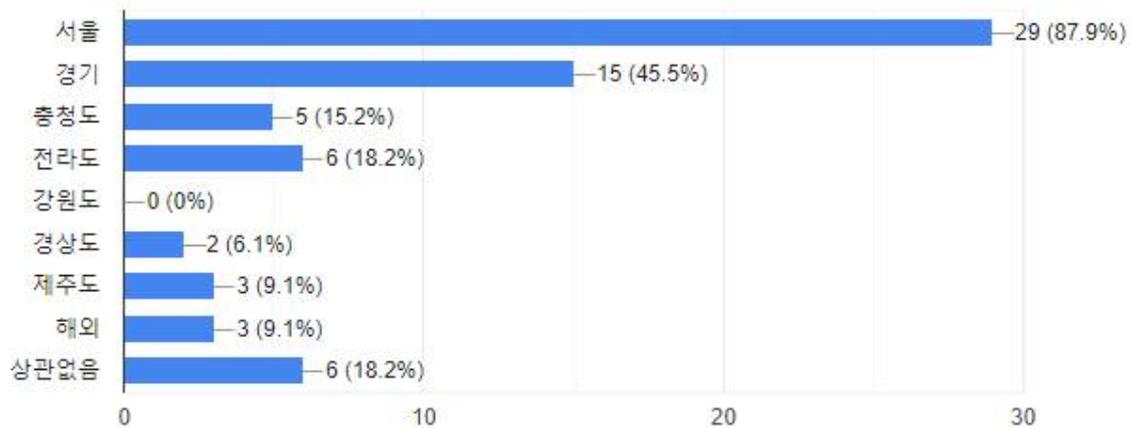
설문조사에 응답한 33명 중 연령은 20대가 63.6%(2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0대로 36.4%(12명)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연령은 30대가 80%(8명), 20대가 20%(2명)이었다.

나) 현재 거주지역

서울이 72.7%(2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라도가 12.1%(4명), 경상도와 제주도가 각각 6.1%(2명), 경기도가 3%(1명) 순이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서울이 87.9%(29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기가 48.5%(16명)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도가 18.2%(6명), 충청도와 ‘지역 상관없음’ 이 각각 15.2%(5명), 해외가 12.1%(4명), 제주도가 9.1%(3명), 경상도가 3%(1명)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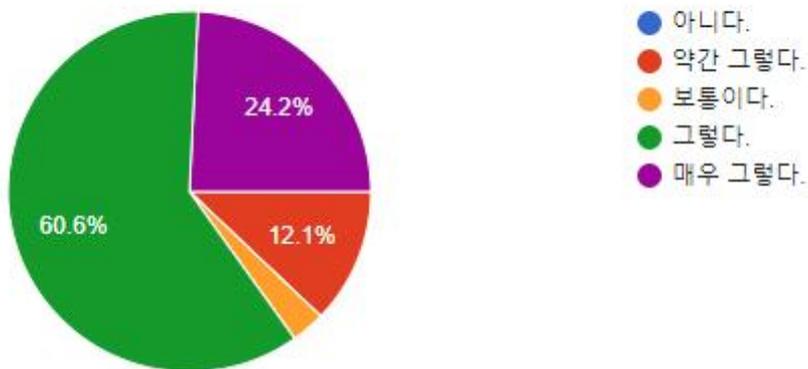


특히, 현재 지역(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익(전업)변호사가 광주가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지역 공익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이 60%(6명), 서울이 아닌 지역(해외 포함)이 40%(4명)이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 80%(8명), 지역이 10%(1명), 해외 10%(1명)의 순으로,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다 해도 수도권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라) 공익 진로 고민 여부

“공익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가 60.6%(20명), ‘매우 그렇다’가 24.2%(8명)로 응답자의 84.8%가 공익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약간 그렇다’가 12.1%(4명), ‘보통이다’가 3%(1명)의 순이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공익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예비 법조인 집단이 아닌,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한 소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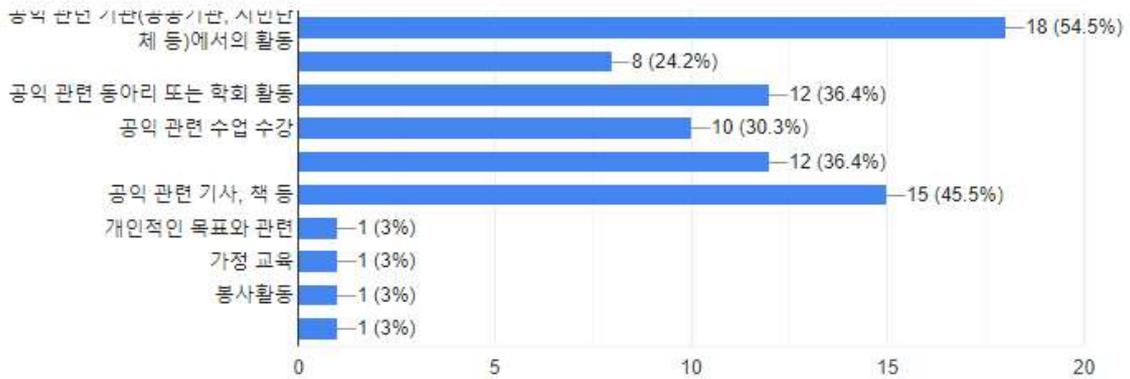


신입변호사의 경우 응답한 10명 가운데 현재 상근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활동기간은 1년 미만인 70%(7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30%(3명)이었고, 변호사 경력기간은 1년 미만이 50%(5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50%(5명)이었다. 응답자 중 2명은 다른 비공익 직역에서 공익 진로로 전환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공익 진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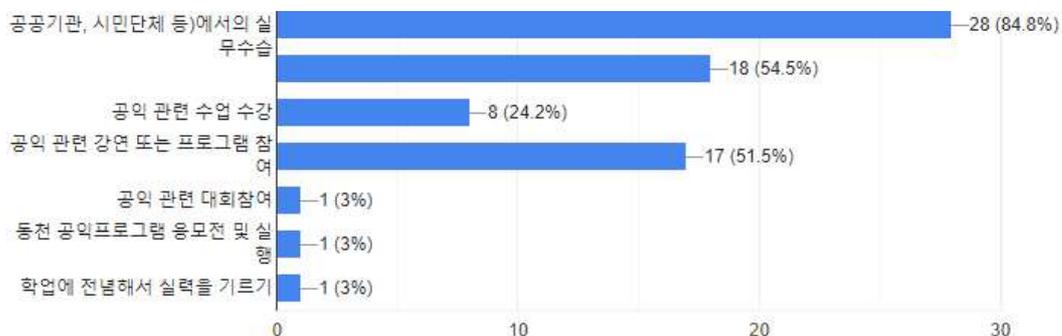
“로스쿨 입학 전 공익 진로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떠한 경로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중복 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공익 관련 기관(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의 활동’이 54.5%(18명)로 가장 많았고, ‘공익 관련 기사, 책 등’이 42.4%(14명), ‘공익 관련 강연 또는 프로그램 참여’가 36.4%(12명), ‘공익 관련 수업 수강’이 33.3%(11명),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이 33.3%(11명)이었다.

‘공익변호사단체에서의 활동’은 24.2%(8명)이었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개인적인 목표’, ‘가정교육’, ‘봉사활동’,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원초적인 생각’이 각 3%(1명)를 차지하였다.



같은 질문에 신입변호사의 경우(중복응답 가능), ‘공익 관련 기관(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의 활동’이 50%(5명),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이 50%(5명), ‘공익변호사단체에서의 활동’이 40%(4명) 등의 순이었다. ‘공익 관련 기관’이 예비 법조인과 신입변호사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공익변호사단체에서의 활동’은 예비 법조인보다 신입변호사의 응답률이 높았다. 신입변호사 설문조사 분석 대상의 숫자가 적어 그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익변호사단체를 경험한 예비 법조인 들이 좀 더 공익 진로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현재) 공익 진로 관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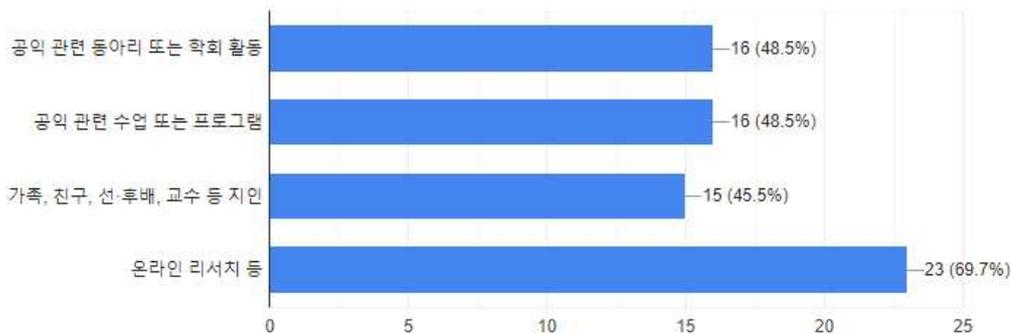
“공익 진로로 가기 위해 로스쿨 재학 중 어떤 활동을 했는가(또는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공익 관련 기관(공익변호사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의 실무수습’이 84.8%(28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

음으로는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이 54.5%(18명), ‘공익 관련 강연 또는 프로그램 참여’ 가 51.5%(17명), ‘공익 관련 수업 수강’ 이 24.2%(8명)의 순이었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공익 관련 대회 참여’, ‘동천 공익프로그램 공모전 및 실행’, ‘학업에 전념해서 실력을 기르기’ 가 각 3%(1명)이었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이 90%(9명), ‘공익 관련 기관에서의 실무수습’ 이 80%(8명), ‘공익 관련 강연 또는 프로그램 참여’ 가 80%(8명), ‘공익 관련 수업 수강’ 이 60%(6명)의 순이었다. 실제 공익 진로에 뛰어들 법률가는 재학 중에도 공익 관련 기관의 실무수습, 관련 강연 또는 프로그램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수강과 같이 꾸준히 공익 진로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 공익 진로 정보 현황

### 가) 공익 진로 관련 정보 출처



“공익 진로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얻었는가.” 라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온라인 리서치 등’ 이 66.7%(22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공익 관련 수업 또는 프로그램’ 이 51.5%(17명),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이 48.5%(16명), ‘가족,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지인’ 이 45.5%(15명)의 순으로, 각 응답에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가족,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지인’ 이 90%(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이 60%(6명), ‘온라인 리서치’ 가 50%(5명), ‘공익 관련 수업 또는 프로그램’ 이 30%(3명)의 순이었다. 공익 진로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예비 법조인의 경우 ‘온라인 리서치 등’ 과 같이 다소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이미 공익 진로에 진입한 신입변호사의 경우 실무수습 선배, 선·후배, 교수 등 지인 즉,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습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입변호사에게는 예비 법조인과는 다르게, “현재 상근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중복응답 가능)” 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변 추천’ 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무수습 경험’ 과 ‘채용공고’ 가 각각 30% (3명), 다음으로 실무수습 이외의 자원활동이나 인턴경험이 20%(2명) 등의 순이었다. 채용정보에 대해 인적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 나) 공익 진로 정보 모색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아쉽거나 어려운 점을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했다. 대체로 제공되는 정보가 분절적이거나 한정적이고 비체계적인 점을 많이 지적했다. 찾기 어려운 정보로는, 구체적인 채용 정보가 급여, 공익 진로 관련 후기, 활동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익전업이 아닌)일반 변호사와의 차이점, 단체 간 특성 등을 비교하는 정보, 공익 진로의 한계나 어려운 점, 필요한 경력이나 처우,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꼽았다. 특히, 각 영역별로 분절된 정보를 통섭적으로 총괄하고 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중앙기관 혹은 창구,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예비 법조인 응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막상 공익 진로 현장에 뛰어들어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점을 많이 지적했다.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로는 채용 정보(당장 내년에 채용하는 것인지 등이 불투명해 막연한 믿음으로 매우 불안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거쳐야 함)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공익변호사의 역사가 짧고 비교집단이나 모델이 적어 향후 진로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한 점,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모델 등 다양한 공익 진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갖지 못하면 공익변호사를 접할 기회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 다) 공익 진로 정보 모색 과정에서의 좋았던 점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인상 깊었던) 점과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질문했다. 공익 진로를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지받을 수 있

는 점, 공익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인터뷰나 공익변호사들이 보람 있게 일을 하는 모습 등을 접한 언론을 통해 공익 진로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점이 좋았다고 답했다.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공익활동의 기회가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열악한 현실에도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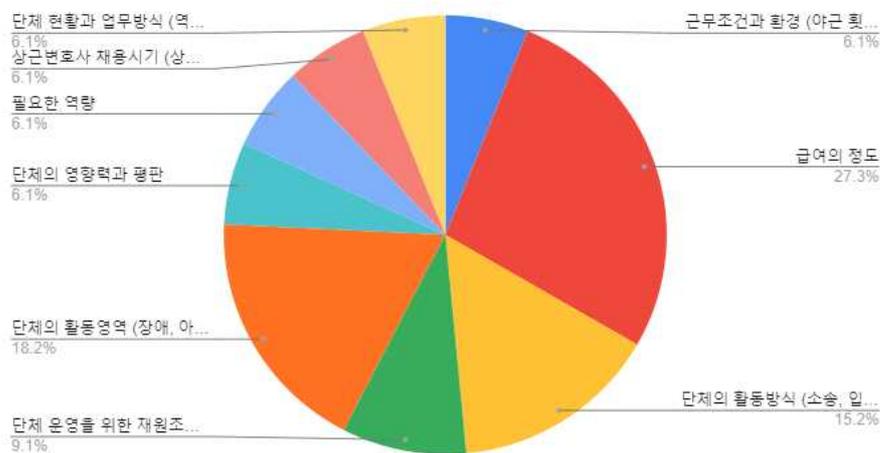
특히, ‘실무수습’을 언급한 답변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공익 진로의 모습, 현장을 경험하면서 공익 진로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 좋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실무수습은 제한된 인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을 위한 실무수습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예비 법조인과 신입변호사 모두 공익 진로 관련 정보에서 ‘실무수습’이 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입변호사의 경우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좋았던 점으로는 실무수습을 많이 지적했다는데, 실무수습 등을 통해 관련 공익 진로 활동이나 정보에 접근하면서 진로가 구체화되고 현실가능한 일임을 알게 되는 점, 공익활동의 길이 점점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신입변호사의 경우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좋았던 점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0%(3명)나 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향후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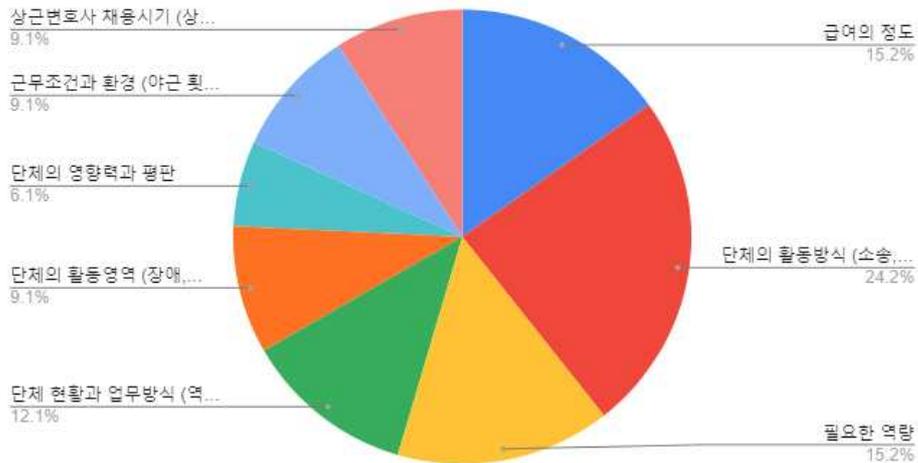
가)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궁금한 것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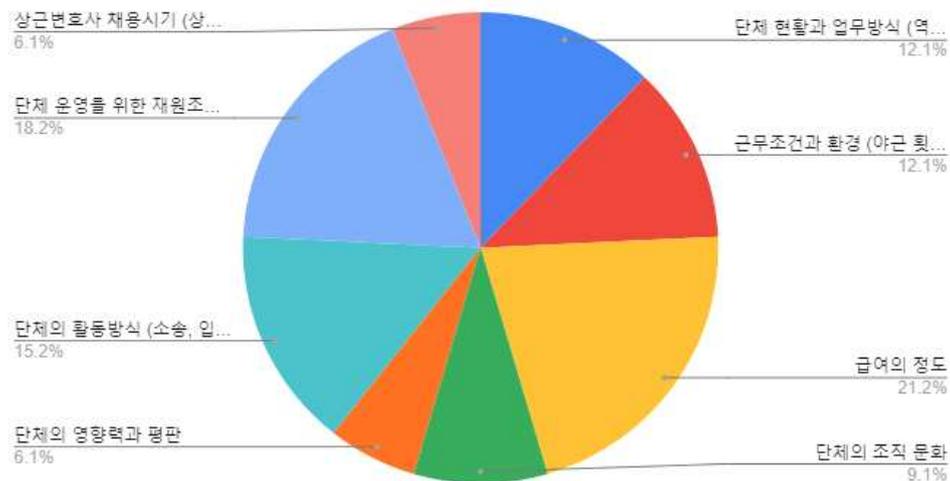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바로, ‘급여의 정도’로 27.3%(9명)이었다. 다음으로 단체의 활동영역과 활동방식이 각 15.2%(5명)를 차지했다.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식’과 ‘단체가 필요로 하는 상근변호사의 주요 역량·자질·능력 등’이 각각 9.1%(3명)이었다. ‘단체 현황과 업무방식’, ‘근무조건과 환경’, ‘단체의 영향력과 평판’, ‘상근변호사 채용시기’가 6.1%(2명)을 차지했다.

### <2순위 응답>



2순위로는, ‘단체의 활동방식’이 24.2%(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급여의 정도’와 ‘단체가 필요로 하는 상근변호사의 주요 역량·자질·능력 등’이 각 15.2%(5명)를 차지했다.

### <3순위 응답>



3순위로 궁금한 것으로는 ‘급여의 정도’가 24.2%(8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단체의 활동방식’과 ‘단체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이 각각 15.2%(5명)를 차지했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공익적 배경이 없더라도 공익 진로 매뉴얼이 있다면 공익 진로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공익 진로가 하나의 전문분야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고, 이후 관심이 생겼을 때 누구나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한 공익 진로 매뉴얼이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공익 진로) 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입변호사는, “공익 진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단체의 다양한 활동방식(소송, 입법운동, 국제인권기구 대응활동 등)’이 90%(9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단체의 활동영역’이 60%(6명), ‘급여조건’이 50%(5명), ‘상근변호사 채용 정보’가 40%(4명)의 순이었다. ‘단체의 영향력과 평판’은 오히려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즉, 예비 법조인의 경우 ‘급여의 정도’를 가장 궁금해 했지만, 막상 공익 진로를 선택한 공익변호사에게는 ‘급여의 정도’가 공익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항목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익 진로의 구체적인 활동방식과 활동영역이 공익 진로 관련 정보에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장에 뛰어드는 공익변호사의 경우 단체의 활동방식과 활동영역, 즉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는 지에 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 (공익 진로 정보 제공 전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과정에서 공익 진로 활동 참여하지 못했던(못하는) 이유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 등 학업에 대한 부담에 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변호사 시험 관련 학점 이수로 인한 시간 부족, 변호사시험과 학점관리에 대한 부담 등이 라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변호사시험 관련 위주의 수업 구성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공익인권 관련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과정에서 공익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 정형화된 공익활

동에 대한 개인적인 거부감 등을 이유로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 또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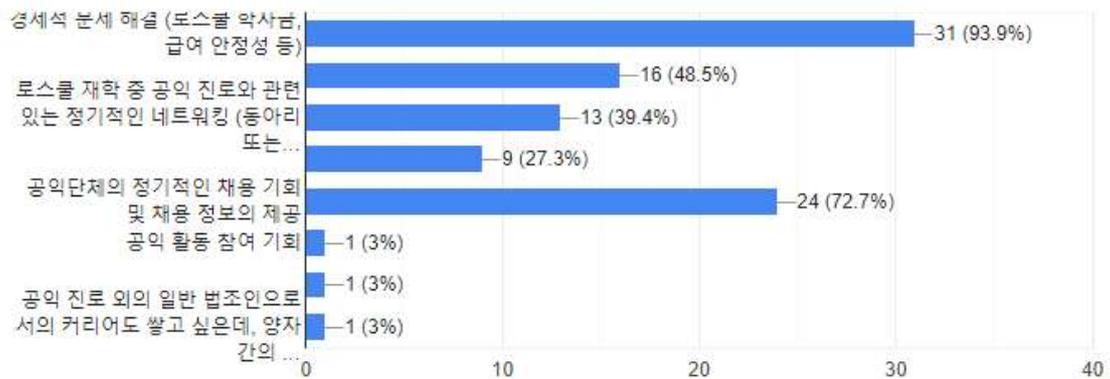
다) (공익 진로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공익 진로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관심 있는 분야의 법조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음에도 공익 진로가 망설여진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예비 법조인들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점, 급여가 적어 생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여럿 있었다. 그 밖에 자신의 능력·자질과 적성이 공익 진로에 적합한지,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분명함, 희생과 과도한 업무량, 커리어의 확장 가능성(다른 진로)의 불투명성을 들었다.

신입변호사에게는 예비 법조인과 다르게 ‘현재 상근하고 있는 조직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망설였던 부분과 그 이유’를 질문했다. 다양한 답변이 있었는데, 조직의 특성상 활동의 자율성(적극적인 공익활동 제약 등),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 조직의 활동분야와 관심분야의 차이, 다른 진로로의 모색 제약, 해당 영역에 대한 역량 강화의 어려움, 혼자 활동해야 하는 점, 송무 경험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결국, 공익 진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에는 관련 공익 정보의 불충분함에서 오는 요인과 공익 진로 정보 제공과 무관한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3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사전경험(실무수습 등)’ 과 ‘조직의 활동영역과 범위’가 각 60%(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직문화’가 40%(4명), ‘급여의 정도’가 30%(3명)이었다. 그 밖에 ‘원래 친했던 사람들’,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 ‘변호사로서의 성장에 대한 선배의 배려와 관심’ 등 함께 일할 현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요소 또한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응답했다.

라) 공익 진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3가지 선택)



‘경제적 문제 해결(로스쿨 학자금, 급여 안정성 등)’ 이 93.9%(31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공익단체의 정기적인 채용 기회 및 채용 정보의 제공’ 이 72.7%(24명),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혹은 매뉴얼’ 이 51.5%(17명)의 순이었다. ‘로스쿨 재학 중 공익 진로와 관련 있는 정기적인 네트워킹’ 이 36.4% (12명), ‘공익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가 27.3%(9명)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공익활동 참여 기회’, ‘공익 진로 외의 일반 법조인으로서의 커리어도 쌓고 싶은데 양자 간의 균형 어려움’, ‘공익단체 내부의 업무 문화 개선’ 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공익 진로를 망설이게 하는 장벽들을 해소하고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막 공익 진로에 뛰어 든 법률가들의 욕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신입변호사에게 “공익 영역에서 일하는 신입변호사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를 질문했다. 일하는 과정에서의 체계적이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답변이 여럿 있었는데, 공익 진로 정보와 매우 닮은 면이 있다. 그 밖에도, 조직문화와 조직운영에 대한 고민, 혼자 소송실무를 해결해야 하는 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비영리조직에 채용될 경우 체계 미비로 인한 법적·비법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점, 변호사 업무 이외의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역량과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선례가 적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였다.

“처음 예상했던 것과 가장 다른 점” 으로는, 과도한 업무량을 답한 응답자가 많았고, 조직문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어려움, 조직문화, 의사결정구조와 자율성 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 으로는, ‘하고 싶은 일, 보람’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라고 답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 그 밖에 조직과 개인(나)의 성장 가능성, 특수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경험과 기회 등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공익변호사로서 필요한 역량” (2가지)에는 10명 전원이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 항목에 손을 들었고, 그 밖에 ‘소수자·사회적약자에 대한 공감능력’ 이 70% (7명)의 순이었다.

마) 원하는 공익 진로와 기대하는 바 (개인)

“활동하고 싶은 공익 분야에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에 대해서는 혐오금지, 성폭력, 아동인권, 국제인도법, 환경, 장애, 사회적경제, 수용자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기를 원했고 활동방식으로는 입법운동(제도개선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으며, 소송과 국제연대활동,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답변도 여럿 있었다. 공익이란 것이 어려운 희생을 요한다거나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면서도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 3. 심층면접조사

#### 가.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0. 12. 23. (수) ~ 2021. 1. 11. (월)
- 조사 대상: 2021. 1.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법조인
- 분석 대상: 12명

심층면접조사에 응답한 12명의 학교 분포는 수도권 8명, 비수도권 4명이었다. 주진행자 1명과 보조진행자 1명이 동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2-4명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응답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설치·운영 중인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이미 다양한 공익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심층면접조사에 응답한 예비 법조인 모두 공익(전업)변호사단체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즉, 응답자 간, 그리고 응답자와 응답하지 않은 예비 법조인 집단 간 공익적 진

로에 관한 정보나 환경의 불균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조사기간 동안 설문조사와 같이, 경력 2년차 미만의 신입(공익전업)변호사를 대상으로도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총 3명의 변호사<sup>35)</sup>가 조사에 참여했다. 예비 법조인과 유사한 질문을 던져, 공익 진로에 접근하지 못한 예비 법조인과 갓 공익 진로에 뛰어든 신입변호사 간에 공익 진로 배경이나 정보, 경험과 생각 등에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물론 신입변호사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인원수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이러한 응답들이 과잉 대표되어 분석·평가될 위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조사 내용

심층면접조사 내용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공익 진로 배경에 관한 내용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과, 재학 중 공익 진로 관련 활동 경력에 답하도록 했다.

두 번째 부분은 공익 진로 관련 정보에 대해 현재를 진단하는 내용이다.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와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아쉬웠거나 좋았던 점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했다.

세 번째 부분은 향후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공익 진로 관련해서 궁금한 항목은 무엇인지, 공익 진로로 진입하는 데에 작용하는 장벽과 이러한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

## 다. 조사 결과

###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공익 진로 관련 경력이나 주요활동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6)</sup>

35) 로펌 기반 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변호사단체에 상근하는 변호사

36) 이하 심층면접조사 응답자의 주요 답변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봉사활동 (교육 등)
- 학생회 활동
- 학부 수업 (공익인권 관련 전문가 초청 등)
- 공익변호사 강연
- 교환 학생 (해외 학부 경험으로 이주인권에 대한 관심)
- 성폭력상담소에서 인턴 활동
- 학교 내 청소노동자 대상 한글교육, 인터넷 언론 기고 등
- ‘공감 인권법캠프’
- 학부 인권센터 자원활동연계 프로그램

응답자 대부분 봉사활동을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공익 진로는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데, 예비 법조인들의 경우 공익활동과 봉사활동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학생회, 수업, 교환학생 등 학부 시절 학교를 통한 공익 진로 경험을 제시하였다.

한편, 특정 학교의 경우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단체와 학부생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학부 때부터 인권단체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활동내용까지 정리된 공익인권단체 리스트가 제공되기도 했다. 학교 간 공익 관련 정보의 격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신입변호사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공익 진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로(관련 경험)로, 공익 관련 기관(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공익변호사단체에서의 활동이 가장 많았고, 공익 관련 동아리나 학회, 관련 수업, 기사나 책 등이라고 답변했다. 예비 법조인들이 대부분 ‘봉사활동’을 언급한 것에 비해, 신입변호사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회적약자 등을 위한 권리옹호활동을 경험으로 제시했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 공익 진로 관련 활동

- 공익인권법학회 (소모임 세미나 등)
- 리걸클리닉 (지역주민을 위한 소송, 자문의견서 작성 등)
- 학교에서의 공익인권활동 경험의 기회 부재
-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프로그램 (공익법무실습, 프로보노, 공익조교 등)

- 서울지방변호사회 ·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동주최 ‘2020년 예비 법조인 공익인권프로그램’
- 인권법 관련 수업과 특강
- 공익인권단체 공모전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행정심판대회 참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는 공익인권법학회나 리걸클리닉 등을 통해 공익 진로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다만, 이것 또한 지역에 따른 큰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정 지역 학교의 경우 공익인권을 특성화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익인권 관련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반면, 서울대학교의 경우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다양한 공익 진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으로 공익 관련 과목을 수강할 여유가 없다는 답변도 여럿 있었다.

신입변호사의 경우에는 모두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을 공익 진로 관련 활동으로 제시하였고, 공익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의 실무수습이나 관련 수업, 강연 또는 프로그램을 참여했다고 답변했다. 예비 법조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학 중 적극적으로 공익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 3) 공익 진로 모색과 관련 정보(매뉴얼 등) 간의 관계, 역할, 필요성

- (공익 진로 관련 정보) 매우 필요, 공익변호사 이미지는 “먹고 살 수 있는가”라는 조직적 로펌보다는 개인활동에 부각되는 이미지가 많음. 이런 막연한 편견, 부정적 요소들을 반박 내지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음.
- 이런 정보(매뉴얼)가 있다면 공익변호사에 대한 고민이 없던 사람이 공익변호사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는 되지 못하더라도 공익변호사 진로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함.
-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 생활 과정에서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것 자체를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정보(매뉴얼) 등이 로스쿨 학업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음.
- 공익 진로를 꿈꾸는 동기들이 매우 적어 관련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어 교수님을 찾아가는 등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함. 공익 진로 정보 · 매뉴얼 매우 필요함.
- 대형로펌 입사를 준비하는 스테디는 많은데, 막상 공익 진로 쪽은 전혀 없음. 개

인적으로 아는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함. 2019년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도 열심히 의식적으로 찾지 않으면 로스쿨 재학생에게는 접근성이 없음. 개인네트워킹을 넘어 “다양한”, “현실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정보가 부족함.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 소수의 공익변호사 사례 이외에도 공익 진로가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중 하나라는 근거가 되는 매뉴얼이 필요함.
- 가족이나 주변의 걱정에 대하여 지지를 구하기 위한 사례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도 될 것임(법학계의 블루오션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공익 진로와 관련 정보와의 관계성을 알아보려고 했다. 응답자 모두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관련 정보(매뉴얼 등)는 매우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답하였다. 특히, 공익 진로 관련 정보가 희박한 현실에서, 관련 정보(매뉴얼)가 있다면 공익적 진로에 대한 막연하고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공익적 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잡아 줄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신입변호사 또한 응답자 모두 공익적 배경이 없더라도 공익 진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익전업모델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공익 진로를 소개하는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익 진로 매뉴얼이 공익 진로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 진로가 하나의 전문분야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익 진로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로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 점은 예비 법조인의 생각과 같았다.

#### 4) 공익 진로 정보 출처

- 학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취업, 실무수습 정보, 실무수습 수기집 등)
- 인터넷 검색 (공익변호사, 단체, 관련 기사 등)
- 책이나 강연 (공익변호사나 단체가 저술한)
- 실무수습
-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 (사전교육 특강, 기관 제안서)

- 공익 진로에 관심이 있는 동기나 선배, 학회원 (다만, 대부분 막연히 힘들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음.)
- 2020년 예비 법조인 공익인권프로그램
- 공익인권법학회 (공익변호사 초청 세미나 등)
- 희망을만드는법 주최 ‘공익인권법실무학교’
-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 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근무 교수님과 상담

예비 법조인의 경우 공익 진로를 얻는 출처가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된 반면, 이미 공익 진로에 진입한 신입변호사의 경우에는 모두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점이 인상적이다. 신입변호사 응답자 모두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얻은 출처로, 실무수습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나 동기, 로스쿨 선·후배,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출처로 제시하였다. 이는 공익 진로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진지할수록 결국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예비 법조인의 경우 공익 진로에 대한 고민의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 5) 현재 공익 진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

##### [예비 법조인]

- 인터넷, 책, 강연, 기사 등은 결국 파편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라, 공익 진로를 이해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부재함.
- 단체활동 또한 공개된 정보는 업적 정도이지 활동(특히 공익소송)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알기 어려움.
- 공익변호사의 직무, 공익소송을 접하거나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고, 공익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공익 쪽에 공감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 거의 없음.
- 로스쿨 내 법률봉사동아리, 리걸클리닉센터 존재만 알 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보 제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음.
- 정보 공유도 알음알음하는 정도여서, 체계적인 정보 파악이 어려움.
- 공익 진로의 만족도는 기사 등에서 언급되기도 하나, 막상 공익변호사로서의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알기 어려움.

- 이미 공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말고도, 공익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될 만한 계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함.
- 공익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종류의 자질이나 역량이 요구되고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 실제 일을 하는 환경, 수임 방법, 업무 방식, 협업 여부 등이 궁금하나 알기 어려움.
- 추상적인 동기 부여를 넘어 공익 진로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고민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움. 직접 정보를 찾는 과정이 쓸쓸하기도 함.
- 채용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움. 알음알음 전해지는 정보들도 많은 것 같음.
- 공익 진로 관련해서 공익변호사들과의 기존 교류가 중요하거나 자리를 소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
- 정책이나 입법 관련 채용 정보도 궁금함.
- 공익인권단체 전체가 정리된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음. (실무수습, 채용시기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익인권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정보를 겨우 찾아볼 수 있어요. 공익에 관심을 촉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공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말고도, 어떤 일로 공익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만한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 예비 법조인 A 인터뷰 중 일부 발췌

대부분 공익 진로 관련 정보가 파편적, 단편적, 추상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데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공익 진로의 어려움이나 한계,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나 요구되는 역량, 실제 일을 하는 방법(수임방법, 업무방식, 협업 여부 등)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 또한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신입변호사]

- 로스쿨 내에 공익 관련 수업(리걸클리닉 등)이 없어서 공익 분야를 잘 아는 교수님이나 공익변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웠고, 인적 자원을 통한 공익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음.
- 관심 있는 분야의 공익변호사 등 연사를 초청하려고 해도 로스쿨 내에 공익 관련 인프라(수업, 담당 교수, 리걸클리닉 변호사 등)가 없어서 연락을 하기 어렵거나

섭외가 되더라도 강사료 마련이 어려웠음.

- 졸업한 로스쿨의 경우, 검찰, 법원, 대형로펌이 아니면 변호사 진로가 아닌 것만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음.
- 공익변호사단체에서의 실무수습을 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공익변호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게 됨. 공익변호사 단체의 실무수습 인원수가 워낙 적다보니 동기들 중 몇 차례 지원했다가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실무수습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공익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 같음. 공익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공익변호사들과 네트워킹이 있다고 해서 상세한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 듯함. 비영리단체가 운영되는 방식, 펀딩, 후원자 관리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주변 지인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음.
- 공익변호사의 경우 기본적인 법률사무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혼자 해야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음.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움.

신입변호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를 떠올려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의 아쉬움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는데, 실무수습이나 공익변호사 초청 등 공익변호사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시도해도 쉽지 않았던 점, 그리고 막상 실무수습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단체 고유의 모금활동이나 행정업무 등 공익변호사가 비영리단체에서 혼자 해내야 하는 다양한 실질적인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기도 했다.

#### 6) 현재 공익 진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의 좋았던 점

[예비 법조인]

- 인터뷰나 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영역이 풍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공익영역에서 활동하는 나를 상상하는 즐거움, 뿌듯함과 함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 공익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뜻이 맞는 동기와 함께 각오를 다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

- 더 알고 싶게 된 계기, 공익분야가 힘들고 희생하는 분야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임을 알게 됨.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이슈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즐거웠음.

#### [신입변호사]

- 실무수습을 통해 알게 된 공익변호사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음. 그러한 소통과정에서 스스로 공익변호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음.
- 실무수습이 가장 좋았음. 공익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배움을 받을 수 있었음.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가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음.
- 성장이 중요하고,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발전적인 요소를 가져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스타일인데, 공익 진로가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생각했음.

예비 법조인은 부족하지만 공익 진로 정보를 찾고 접하는 과정에서 나 또한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고 응답하였다. 신입변호사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실무수습을 여럿 언급하기도 했다.

#### 7) 공익 진로 매뉴얼·가이드에 담아야 할 항목

##### [1순위]

- 급여조건 (4명<sup>37)</sup>)
- 활동방식(과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3명)
- 필요한 자질과 역량 (1명)
- 단체현황과 근무방식 (1명)
- 단체의 조직 문화 (1명)
- 근무조건과 환경 (1명)
- 단체의 영향력과 평판 (1명)

공익 진로 매뉴얼·가이드에 담아야 할 최우선 항목으로는, 급여조건과 활동방식이 비교적 많이 지적되었고, 그 외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 등을 답변한 경우가 있었

---

37) 1명은 급여조건과 재원조달방식을 함께 언급했다.

다. 한편 활동방식에 비추어 공익 진로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항목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급여조건과 더불어, 활동방식, 단체운영을 위한 채용조달방식, 근무조건과 환경, 단체의 조직문화를 제시하여, 공익 진로 매뉴얼에 담은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순위 외 필요한 항목 복수 응답]

- 공익 진로 개발을 위한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커리큘럼
- 비공익 진로에서 공익 진로로 온 사례, 공익 진로에서 다른 직역으로 가게 된 사례, 공익 진로를 이탈한 경우 구체적인 이탈 사유
- 활동방식(역량과 자질에 맞는 일인지 체크가능한 항목)과 업무방식
- (1순위로는 필요한 자질과 역량) 다음으로 급여의 정도, 단체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의 순. 그 외, 상근/전업 이외의 공익 진로에 대한 방향이나 방법 등 정보
- 활동방식(다양한 역량 발휘할 수 있는 소송 외 방법 모색), 채용조달방식, 급여수준. 그 외, 활동가 병행, 일반변호사활동 병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 공익 진로를 가기 위해 필요한 경력 (대형로펌 혹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을 선호한다든지 하는 등)
- 채용되기 위해 어필해야 하는 역량
- 활동 방식 (구체적으로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면 어떤 내용을 활용하는지 등)
- 활동의 내용 (단체에서 어떤 소송을 하는지, 캠페인을 하는지, 국제회의는 어떤 일로 하게 되는 지를 현실감 있게)

공익인권을 특성화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익 진로 커리큘럼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공익 진로가 아닌 영역에서 공익 진로로 오거나 공익변호사를 하다가 이탈한 사례 등 공익 진로의 역동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공익인권활동을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모델에 관한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8)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 그럼에도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장벽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비 법조인]

- 학업에 대한 부담 (공익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정 희생 등)
- 경제적인 부담, 지속가능성 (학자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공익 진로 모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 활동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압력 (주류사회의 이해와 상충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
- 적성에 맞을 지에 대한 확신이 없음.
- 공익 진로로 시작할 경우, 다른 진로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졌을 때 가능할지)
- 첫 직장, 송무 경험의 중요함.
- 로스쿨 3년 앞은 지식만으로 당장 공익변호사를 할 수 있을지 (필요한 전문성, 자질, 역량에 대한 고민)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일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 공익 진로에 대한 가족 등 주변의 우려와 걱정 (투여한 노력에 비해 적은 아웃풋)
- 얼마 되지 않는 공익변호사 자리에 지원해서 다 떨어질 경우 취업에 대한 걱정
- 상근변호사가 없거나 변호사가 소수인 단체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울 것 같음.
-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는 체계나 매뉴얼 등이 없어 피하고 싶음.

예비 법조인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에 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익변호사 자체의 특성에 대한 우려였는데, 활동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압력, 과도한 업무량, 다른 진로로의 전환의 어려움 등이었다. 규모가 작거나 같이 일하는 상근변호사가 없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경우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 내지 조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 우려와 걱정에 대한 답변도 여럿 있었다.

[신입변호사]

- 조직의 상근 변호사의 업무 중 송무 비중이 높지 않아서 송무 경험을 많이 못 할 것 같았음.

- 새내기 공익변호사로서 여러 영역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고 활동할 분야를 정하고 싶었음. 그런데 경력이 적고, 단체의 주 활동 영역에 대한 경험,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근변호사로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또한, 신입변호사의 경우, 공익영역에 갓 뛰어들 법률티가로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에 대해 별도로 질문했다. 답변으로는, 조직에서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 펀딩과 행정업무, 법률티가로서의 업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 다른 인권단체와의 네트워킹이나 성명서 작성, 기자회견 등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우지 않는 활동을 해나가야 하고, 법률티가로서 단체 활동가와의 관계 설정과 협상 등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오히려 예비 법조인이 많이 우려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답변보다는, 현재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편 “처음 예상했던 것과 (지금 상근하고 있는 조직이)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직 내 네트워킹 형성이나 소통의 어려움, 단체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의 어려움(지속가능성 불투명), 연차에 따른 위계질서 등 의사결정구조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 으로는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방식 등)라고 답변했고, 조직과 개인의 성장가능성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결국, 신입변호사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이나 외부 단체 활동가 등과의 소통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에서 나와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보람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9) 더 많은 공익 진로를 꿈꾸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같은 진로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 및 공익 진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서로 신뢰라며 지지할 수 있는 동료)
- 로스쿨 과정에서 실무수습, 강연 등 공익 진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
- 공익인권특성화 학교의 경우, 공익인권특화 과목 수업을 독려하거나 관련하여 다양한 기회의 제공 필요
- 로스쿨 내 ‘전문화 인증 제도’ 활용
- 모든 로스쿨이 공익 진로가 필수적 진로 중 하나라는 전제, 학교마다 공익전담교원의 필수적 배치(공익 관련 프로젝트 진행, 공익 진로 상시상담창구 등의 기능

기대) 및 공익 진로개발을 위한 각 학교의 환경과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발

- 공익 진로 특성화 로스쿨의 공익 진로 기능 회복
- 학교 내에서 접할 수 있는 공익 진로 관련 네트워킹, 정보 제공 필요. 재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모호한 감정 해소 기대
- 로스쿨 재학 중 공익 진로 관련 지속적인 네트워킹
- 공익변호사기금, 십시일반 장학금 같은 제도
- 공적인 지원체계 [국가에서 대학원생 지원해주는 BK장학금(학비, 연구비, 생활비 포함) 같은 지원제도 등]
-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로스쿨 학비탕감제도 등)
- 공익인권법학회 활동의 확장, 실무적인 활동 확대 (외부에서 하는 공익소송 리서치, 서면 작성 등에 참여 등).
-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익법률센터(리걸클리닉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거나 인권법학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상법학 수업 개설, 학생들이 프로젝트 제안을 하면 학생들의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공익법률센터에서 보완하는 방안 마련
- 공익 진로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는 지원이나 프로그램 마련
-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일반시민이 공익변호사 활동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음. 공익변호사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결국 급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면 훨씬 잘 벌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걸리는 것 같아요. 사건을 통해 받는 것은 아니고 후원 구조이다 보니 많이 벌기는 힘든 것 같고, 공적으로 지원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대학원생 지원해 주는 장학금 같은 재원을 공익변호사 하겠다는 사람에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예비 법조인 B 인터뷰 중 일부 발췌

결국, 네트워킹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이 때의 ‘네트워킹’은 같은 공익적 진로를 꿈꾸는 동료와의 소통이자 선배 법률가, 현장단체와의 소통이기도 했다. 공익 진로 정보 매뉴얼을 개발하더라도 그 정보와 매뉴얼을 잘 전달하고 소통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대목이기도 하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제언도 인상적이었는데, 공익인권을 특성화한 학교의 경우에

는 과연 특성화에 따른 공익인권 관련 교육·훈련이 잘 제공되고 있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공익인권 관련 과목 수강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익인권을 특성화하지 않더라도 예비 법조인라면 누구나 공익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원을 배치하거나 각 학교의 환경과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익인권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러한 공익 진로 관련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관련 기금이나 학비탕감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한다.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적으로 이러한 공익 진로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10) 지금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의 욕구: 장래에 활동하고 싶은 영역, 자신의 공익 진로활동에 대한 기대

- 난민 (여전히 인권분야 중에서도 소외받는 사각지대라고 생각)
- 환경, 제조물책임소송 전담 변호사
- 장애
- 여성청소년 활동
- 이주인권 분야
- 소외된 소수자를 위한 입법활동
- 여성인권(대상화하지 않고 지식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 아동청소년인권: 소년부 판사
- 노동인권
- 이주여성: 이주여성인권 관련 법률활동을 하는 단체 설립

현재 예비 법조인이 꿈꾸는 활동영역이나 자신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질문했다. 영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외된 소수자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답변 등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 소결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예비 법조인은 대부분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무수습에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공익 진로 관련 정보에 접근성이 좋은 집단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3명 중 28명(84.8%)이나 공익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분명히 드러내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익 진로 관련 질문에 충실하고 풍부하게 응답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전체 예비 법조인 집단의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도 있다.

2019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사단법인 두루가 수행한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에서는 전·현직 공익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시했지만, 막상 공익변호사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하지 않는 예비 법조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예비 법조인의 공익 진로에 관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만, 여전히 분석 대상의 숫자가 적어 과대대표될 가능성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예비 법조인의 욕구에 응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좀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긴 호흡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및 공익 진로 배경에 관한 내용, 두 번째 부분은 공익 진로 관련 정보에 관한 현재를 진단하는 내용, 세 번째 부분은 향후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질문했다.

우선 공익 진로 배경과 관련해, 공익변호사단체 등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이 공익 진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신입변호사의 경우 (비록 분석 대상의 숫자가 적지만) 대부분 공익단체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실무수습 경험이 공익 진로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을 좀 더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예비 법조인과 신입변호사 모두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무수습’을 많이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익 진로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현장을 경험하면서 공익 진로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실무수습이 제한된 소수의

인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을 위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신입변호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작용했던 요소 중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실무수습 등 사전경험’이 60%(6명)로 가장 많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예비 법조인과 신입변호사는 공익 진로 관련 정보의 경우 과편적, 단편적, 추상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데 관련 정보(매뉴얼 등)는 매우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답했다. 공익 진로 관련 매뉴얼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공익 진로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면 공익 진로에 대한 막연하고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공익 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잡아 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궁금한 것, 즉 향후 공익 진로 매뉴얼 등에 담아야 할 항목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모두 예비 법조인은 ‘급여의 정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반면, 신입 변호사의 경우 급여의 정도가 아닌 구체적인 활동방식과 활동영역 등 다양한 항목들을 지적한 차이를 마주할 수 있었다. 막상 공익 진로를 선택한 공익변호사에게는 ‘급여의 정도’가 공익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재미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경향은 2019 실태조사 및 미국의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19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 소속 단체에서의 지속 근무 희망 여부 응답을 현재 급여 수준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현 단체의 근무를 지속하고 싶은 희망 여부에서 급여 ‘200만원 미만’ 및 ‘5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저임금일수록 단체 근무 지속 의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9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급여 수준과 단체의 지속 근무 희망 의사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성은 찾지 못했다.<sup>38)</sup> 이와 관련하여 미국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스탠포드 로스쿨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공익변호사들의 급여도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는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낮은 급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단체 상근자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희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직군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채용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급여 인상 폭이 낮기 때문에 연차가 오래될수록 이탈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가정을 꾸리

38) 위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100-101.

게 되면서 공익변호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공익변호사 단체는 젊은 변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국의 낮은 연차 변호사들이 진입 시에 급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39)</sup> 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한국에도 오랜 연차를 쌓은 변호사가 증가한다면 이탈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위 지속근무희망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공익변호사 단체의 지속가능성과 관계가 깊다.<sup>40)</sup>

이번 연구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오히려 신입변호사들이 공익 진로의 구체적인 활동방식과 활동영역이 예비법조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응답하였다는 부분이다. 현장에 뛰어든 공익변호사의 경우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는 지에 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예비 법조인이 급여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항목이 ‘활동방식’ 이었는데, ‘활동방식’ 을 통해 ‘공익 진로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 이라는 항목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항목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공익인권활동을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모델 또한 포함한 다양한 공익 진로가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 이러한 민간 공익로펌·법률사무소(영리 혹은 수익 모델)은 VI.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신입변호사는 막상 공익 현장에 뛰어들어보니 단순히 법률지원활동 이외에도 국제연대활동이나 캠페인, 모금(펀딩)활동과 같은 행정업무 등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매뉴얼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2019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와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기금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욕구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예비 법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공익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관련 기금이나 학비탕감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공익 진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도 ‘경제적 문제 해결(로스쿨 학자금 등)’ 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대부분 비영리단체가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적으로 이러한 공익 진로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

39) 위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86. [표 57] 공익전업변호사 가장 힘든 점 참조

40) 위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166.

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V.장에서 미국 로스쿨의 학자금 상환 지원 양성제도 등을, VI.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공익 진로 관련 기금 현황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2019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의 경우 공익변호사 로스쿨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 리걸클리닉과 공익법률 커리큘럼 강화, 공익변호사 연구 협력 등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나 졸업 후 공익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예비 법조인은, 공익인권을 특성화한 학교의 경우에는 과연 특성화에 따른 공익인권 관련 교육·훈련이 잘 제공되고 있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공익인권 특성화의 기능을 회복(내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익인권 관련 과목이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이러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인권을 특성화하지 않더라도 예비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공익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원을 배치하거나 각 학교의 환경과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익인권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예비 법조인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비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 진로 관련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공익 관련 수업과 같이 학교를 통해 공익 진로 관련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24.2%(8명, 전체 33명)에 그쳤고, 심층면접조사 과정에서 공익인권을 특성화한 학교(지역)임에도 학교에서 공익인권 관련 경험을 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여러 참여자가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기반 공익법률활동 활성화 과제가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점이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연구와 동일하게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신입변호사의 경우 지방에 위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여럿 확인되었다. 2019년 연구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는 광주가 유일하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예비 법조인이 많이 우려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보다는 현재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는, 하고 싶은 일과 보람,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신뢰라고 답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

공익 진로 관련 출처와 관련해서는, 공익 진로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예비 법조인의 경우 ‘온라인 리서치’와 같이 다소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이미 공익 진로에 진입한 신입변호사의 경우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습득한 통로로 ‘가족,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지인’이 90%(9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공익 진로를 모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법조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서, 더 많은 예비 법조인이 공익 진로를 꿈꾸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한 답변 또한 많았다. 이때의 ‘네트워킹’은 같은 공익적 진로를 꿈꾸는 동료와의 소통이자 선배 법률가, 현장단체와의 소통을 의미하기도 했다. 공익 진로 정보 매뉴얼을 개발하더라도 그 정보와 매뉴얼을 잘 전달하고 소통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대목이기도 하다.

## V. 미국 로스쿨의 공익변호사 지원·양성 제도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예비 법조인이 공익 진로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로스쿨의 학자금 상환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과 공익 단체의 채용 기회 및 채용 정보 등 공익 진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향후 한국의 공익변호사 지원·양성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스쿨의 역사가 길고, 많은 변호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 이 중 특히 정부와 로스쿨 등이 제공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과 학교가 제공하는 공익변호사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학생들 역시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익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비싼 학비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원하는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공익 분야의 변호사로서의 임금은 평균 7만~9만 달러<sup>41)</sup>로 일반 변호사의 평균 임금이 약 16만 달러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분야로의 진로를 선택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로스쿨 학생들의 공익 분야 진로 활성화를 위해 연방 및 주 정부, 그리고 로스쿨 내부에서 다양한 대출금 상환 제도 및 펠로우십 제도를 두고 있다.

#### 가.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2007년, 미국은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The 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of 2007)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빈곤, 인종차별 등 미국의 근본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1965년 고등교육법의 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연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학자금 지원의 폭을 넓혀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하였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법의 각 장은 미국의 연방 그랜트, 학자금 융자에 있어서의 혜택과 조건, 융자 상환 면제, 파트너십 그랜트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익 분야의 변호사 외

41) Public Interest Lawyer Salary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salary.com/research/salary/posting/public-interest-lawyer-salary> 에 의하면 2020년 12월 28일 기준, 공익 변호사(public interest lawyers)의 평균 임금은 83,349달러로, 대부분의 공익 변호사는 72,396달러에서 95,737달러 사이의 임금을 받는다. 같은 해 조사된 미국의 전체 변호사 평균 임금은 167,059달러로 집계되었다.

에도 소방공무원, 간호사 등을 위한 지원 제도, 빈곤지역 등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학원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소수민족을 위한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의 투자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참고할만한 규정은 제4장의 학자금 상환 면제(Loan forgiveness)에 대한 조항으로, 이 법은 공익 분야(public service)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은 남은 학자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공익 분야의 직종’이란 “안전재난 관리, 정부, 군대, 공공 안전, 입법, 공공 보건, 공공 교육, 사회 복지, 그리고 공익법 서비스(검찰, 국선 변호, 저소득층을 위한 옹호활동, NGO단체 등을 포함),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공공 도서관 및 학교의 도서관 사서 및 기타 학교 관련 서비스, 또는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제501(c)(3)조에 의해 면세의 대상<sup>42)</sup>이 되는 기관” 등이다.<sup>43)</sup> 이 때 고용의 형태는 풀타임 근무여야 한다. 현재 이와 같은 정의는 공익 분야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공익 분야 진출 학생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학자금 상환 면제 제도 및 장학금, 펠로우십 제도에도 이와 같은 정의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수입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액의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환액을 낮출 수 있는 수입 기준 상환 제도(Income-based Repayment)를 소개하고 있다(제493C조).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경우, 소득액의 15%를 넘지 않는 금액만을 학자금 대출을 위해 사용하게 하고, 25년 이후에도 상환할 대출금이 남은 경우 대출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익 분야 변호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42) 연방세법 제501(c)(3)은 연방소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면세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 단체에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문학, 교육, 국내 및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아동과 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법인, 수익이 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재단, 법인 등”이 포함된다.

43) PUBLIC SERVICE JOB.—The term ‘public service job’ means— “(i) a full-time job in emergency management, government, military service, public safety, law enforcement, public health, public education (inclu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ocial work in a public child or family service agency, public interest law services (including prosecution or public defense or legal advocacy in low-income communities at a nonprofit organization), public child care, public servi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public service for the elderly, public library sciences, school-based library sciences and other school-based services, or at an organization that is described in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nd exempt from taxation under section 501(a) of such Code; or “(ii) teaching as a full-time faculty member at a Tribal College or University as defined in section 316(b) and other faculty teaching in high-needs areas,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 나. 로스쿨 자체 운영 제도

1) 학교 운영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 (LRAP: Loan Repayment Assistance Program)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차원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주요 로스쿨들은 자체적으로 학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로스쿨의 학비가 타 학과에 비해 비싸므로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학생이 학비와 재정적인 문제로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학생들은 연방 정부의 공익 분야 학자금 상환 면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 주 정부, 연방 정부에 따라 지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학자금 상환 계획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자금에 대해 이해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상환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연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상환액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연 수익이 55,000달러 이하인 경우 의무 상환 금액이 없으며 55,000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34.5%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 공익 전담 펠로우십 제도

학자금 상환 지원 외에도 미국은 다양한 펠로우십(fellowship) 제도를 두어 졸업 후 공익 분야의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활동하며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익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정 재단 및 단체, 로스쿨 자체에서 제공하는 영역별 및 주제별로 다양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임금 및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로스쿨들은 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의무 인턴십을 수행할 때, 공익 분야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일정 정도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로펌 또는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임금보다는 낮을 수 있으나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제공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로펌에서도 채용 시 공익 분야의 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호하는 등의 문화가 조성되어 특히 1학년 여름학기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인턴십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sup>44)</sup>

공익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요 펠로우십에는 스캐든 펠로우십, Equal Justice Works 펠로우십이 있으며, 분야별로 Immigrant Justice Corps 펠로우십, Justice Catalyst 펠로우십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자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펠로우십이 있다.

#### 가. 주요 펠로우십

##### 1) 스캐든 펠로우십 (Skadden Fellowship)

웹사이트: <https://www.skaddenfellowships.org/>

스캐든 펠로우십은 미국의 대형 로펌인 스캐든 압스(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에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한 스캐든 펠로우십 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 기금으로, 1988년부터 매년 로스쿨 졸업 예정자 중 공익 분야에서 전담으로 활동할 변호사들에게 2년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 1월 현재까지 미국 45개 주의 900명 이상의 학생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을 받은 펠로우의 90%가 펠로우십 기간 종료 후에도 공익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하였다.<sup>45)</sup> 지원 금액에는 임금과 기타 생활비, 공익 변호사를 채용한 기관에 대한 일정 정도의 비용, 그리고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펠로우십 기간 동안의 학자금 상환 비용 등이 포함된다.

##### 2) Equal Justice Works Fellowship

웹사이트: <https://www.equaljusticeworks.org/>

Equal Justice Works는 1986년 로스쿨 학생들에 의해 설립되어 공익 법률 활동과 공익 변호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로펌, 미국 변호사협회 등의 후원을 통해 매년 펠로우를 선발 및 지원하고 있다. 펠로우로 선정된 신입 공익 변호사들

---

44) 김창호 변호사 인터뷰 (2021. 1. 20.). 김창호 변호사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JD 과정을 거친 후 졸업생을 위한 시카고 대학교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이 펠로우십 기금으로 2015년부터 1년간 일본 도쿄에 위치한 Human Rights Now에서 상근변호사로 근무했다.

45) 스캐든 펠로우십, <https://www.skaddenfellowships.org/> (2021. 2. 1. 확인).

은 2년 동안 임금과 생활비 지원과 함께 국내 연수 및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펠로우의 85% 이상이 공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sup>46)</sup>

또한, Equal Justice Works 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와 커리어 페어 (Equal Justice Works Conference and Career Fair)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미국 내 공익 분야 직역과 관련한 최대 규모의 행사로, 공익 분야의 20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하여 학생들에게 공익 분야 진출 시 필요한 자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한다. 매년 전국 150여 개의 로스쿨에서 1,400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하여 워크숍에 참여하고 이력서에 대한 조언도 얻는데, 이러한 행사는 다른 학교 학생들 및 활동가, 졸업생 등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sup>47)</sup>

### 3) Immigrant Justice Corps Fellowship (이주민 지원)

웹사이트: <https://justicecorps.org/justice-fellowship/>

Immigrant Justice Corps는 미국의 이주민들을 위한 법인으로, 미국 내 이주민들이 법률 지원에 있어 특히 소외된다는 것을 확인한 전·현직 판사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미국의 로빈후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로스쿨 교수, Equal Justice Works 등 펠로우십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현직 변호사들 등의 자문을 받아 2014년 설립되었다. 현재 법인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Immigrant Justice Corps의 펠로우로 선정된 로스쿨 졸업생은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난민, 강제퇴거, 특별 이주아동 비자 발급, U&T비자 등 이주 관련 활동을 하는 호스트 단체들에 배정되며 2년간의 임금과 보험 등을 제공받는다. 2014년, 뉴욕 주의 18개 호스트 단체들과 시작한 Immigrant Justice Corps는 현재 11개 주에서 49개의 호스트 단체, 83명의 펠로우와 함께 하고 있으며, 펠로우의 92%는 현재도 이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sup>48)</sup>

46) Equal Justice Works, <https://www.equaljusticeworks.org/> (2021. 2. 1. 확인).

47) Equal Justice Works 2020 Conference and Career Fair, <https://www.equaljusticeworks.org/conference-and-career-fair/about/> (2021. 2. 1. 확인).

48) Immigrant Justice Corps, <https://justicecorps.org/justice-fellowship/> (2021. 2. 1. 확인).

#### 4) Justice Catalyst Fellowship

웹사이트: <https://justicecatalyst.org/fellows/>

Justice Catalyst는 로스쿨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한지 2년 내의 졸업생 중 공익 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연장이 가능한 1년의 펠로우십을 제공한다. 특히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하는 단체라면 연방세법 제501(c)(3)의 비영리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선정된 펠로우가 일하고자 하는 단체에 6만 달러를 후원해 이 비용을 임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ustice Catalyst가 지원하는 활동에는 법 개정 및 연구 등 입법 활동도 포함되나 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활동은 변호사의 소송이다.

#### 나. 학교 운영 펠로우십 제도

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펠로우십 기회 외에도 미국의 주요 로스쿨들은 자체 펠로우십 제도를 운영하며 공익 분야에서의 활동을 계획하는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등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동창회와 졸업생들의 후원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일정 숫자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학교 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은 자신의 활동 계획과 활동을 하고자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제안하여야 하며, 선정되는 경우 연간 3만~5만 달러의 활동비, 임금,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다.

주요 로스쿨들은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세미나 등을 통해 공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런치 토크를 운영하여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또는 단체 활동가를 초대하여 공익 분야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또는 요구되는 자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이 때, 학교의 펠로우십 또는 외부 펠로우십을 소개하는 등 공익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이 재정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sup>49)</sup>

### 3. 공익법센터

미국의 많은 로스쿨들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공익 진로를 소개하고, 관

49) 김창호 변호사 인터뷰 (2021. 1. 20.).

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익 진로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에는 공익변호사나 공직에서 근무하던 변호사 등이 상근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① 재학생 여름 인턴, 클리닉 활동 등 지원 ② 인턴십 및 취업 상담 제공 ③ 펠로우십 지원 ④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⑤ 공익법 강의 및 프로그램 주최 등이다. 또한, 공익 전업 변호사의 진로 뿐 아니라, 영리 변호사가 프로보노로 공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하버드의 OPIA,<sup>50)</sup> 예일의 CDO,<sup>51)</sup> 스탠포드의 Levin Center,<sup>52)</sup> 컬럼비아의 CPIL<sup>53)</sup> 등이 대표적인 공익법센터로, OPIA는 1990년에 개설되었는데, OPIA가 개설된 이후 하버드에서 공익 진로를 희망하는 로스쿨생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졸업생 중 15% 이상이 곧바로 공익 진로로 진출하고 있고, 2015년 여름에는 450명<sup>54)</sup> 이상의 재학생이 공익 분야의 실무 수습에 참여하는 등 공익 진로 진출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sup>55)</sup>

#### 4. 공익 진로 매뉴얼

##### 가. 공익 직역

로스쿨에서 공통적으로 공익 진로로 소개하는 직역으로는 정부, 검찰, 국선변호사, 국제기구, 노동조합, NGO, 민간 공익 법률사무소 등이 있다. 커리어 가이드, 매뉴얼 등 책자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1) 정부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정부 부처에서

---

50) Bernard Koteen Office of Public Interest Advising (OPIA), <https://hls.harvard.edu/dept/opia/> (2021. 2. 1. 확인).

51) Career Development Office,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 (2021. 2. 1. 확인).

52) John and Terry Levin Center for Public Services and Public Interest Law, <https://law.stanford.edu/levin-center> (2021. 2. 1. 확인).

53) Center for Public Interest Law, <https://www.law.columbia.edu/academics/public-interest> (2021. 2. 1. 확인).

54) 하버드 로스쿨의 한 해 입학 정원은 500명 이상이다.

55) “History and Mission”, OPIA, <https://hls.harvard.edu/dept/opia/about/our-goals/> (2021. 2. 1. 확인).

일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특히 법무부(DOJ)에서 변호사를 많이 고용하는데, 대부분은 검사이다.

정규직 외에 Government Honors Program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로스쿨 졸업생(펠로우십을 마친 변호사 포함)이 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 고용되어 수개월 단위로 팀별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해진 계약 기간(1-2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해당 부처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한다.

## 2) NGO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이다. 임팩트 소송 수행, 입법운동 및 법제도 연구, 국제연대 등의 업무를 하고, 분야는 다양하다. 공익 분야, 즉 주제별로 하고 있는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NGO 커리어 가이드를 발간하기 보다는, 주제별로 가이드를 발간하는 경우가 많다(이하 **나. 공익 이슈** 참조).

## 3) 민간 공익 법률사무소(Private Public Interest and Plaintiffs' Firm)<sup>56)</sup>

민간 공익 법률사무소는 사회에서 대변되지 못하는 가치를 대변하거나,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법률사무소이다. 비전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NGO와 유사하나,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사건을 유료로 수입하는 영리 기반이라는 점에서 NGO와 차이가 있다. 타 영리 법률사무소와의 차이는 사건의 ‘주체’와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공익 법률사무소의 주된 분야는 ① 형사 소송 ② 노동자 측 대리(노동조합, 체불임금, 고용차별, 산업안전 등) ③ 시민권 소송(장애인권, 수형자 인권 등) ④ 이민 ⑤ 소비자 보호 ⑥ 환경 등이고, 원고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 공익 법률사무소는 다른 법률사무소나 중개기관, 변호사협회 혹은 의뢰인의 소개로 사건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 사건이 노출되어 유사한 사건의 의뢰인이 찾아오기도 한다. 민간 공익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유료로 수입하되, 대부분 성공보수를 받고, 패소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승소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과 사회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까다롭게 검토한다. 다른 법률사무소보다 적은 요율을 부과하거나, 의뢰인의 수입에

---

56) 이하의 내용은 2013 by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Private Public Interest and Plaintiffs’ Firm Guide, OPIA·CPIL (2013)를 참조하였다.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큰 규모의 법률사무소는 35명 이상의 변호사가,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는 10명 미만의 변호사가 근무한다. 다른 법률사무소에 비하면 비교적 근무 환경이 친밀하기 때문에 취업할 때 해당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성격과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 법률사무소에 비하면, 신입 변호사가 많은 책임을 부담한다.

NGO보다 급여는 높으나, 근무시간은 훨씬 많다. 급여는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비슷한 정도인 \$40,000~50,000이다. 많이 받는 곳은 \$80,000를 받기도 한다. 수입해온 사건만큼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평균적으로 주당 50-60시간 근무하고, 재판이 없으면 일주일에 하루 일하기도 하는 등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다. NGO나 정부기관보다 시설과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다.

#### 4) 국제적인 공익법 직역(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Law)

‘국제적인 공익법 직역’ 파트에서 로스쿨들은 주로 U.S. Government Work,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I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등을 소개하고 있다.

#### 나. 공익 이슈

하버드에서 제시하는 공익 이슈는 다음과 같다.<sup>57)</sup> 다른 로스쿨도 공익 이슈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하버드에서 제공하는 리스트가 그 수가 가장 많고, 개별 가이드라인도 잘 갖추어져 있어 이하에서는 하버드의 리스트를 소개한다.

AIDS/HIV, 동물, 예술/엔터테인먼트, 파산, 기업/경제 이슈, 아동/청소년*, 시민권/자유권*, 통신, 소비자, 형사, 사형제도, 장애, 가정 폭력, 경제 개발*, 교육*, 노인, 환경/에너지*, 가족, 농촌/이주노동자,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LGBT, 총기 규제, 내부고발자, 건강/의료, 홈리스/주거, 인권, 이주/난민, IP/IT, 소년법, 노동, 아메리카 원주민, 의료과실/제조물책임, 검찰*, 빈곤, 국선변호사*, 수형자, 법률 구조*, 부동산, 인종/민족, 종교, 재생산권, 세금, 무역, 여성*
---

하버드는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어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① 어떤 업무를 하는지(Practice Areas),

57) 이하 \*표시를 한 이슈는 하버드에서 이슈별 커리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 이슈이다.

② 세부적인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Issue Areas), ③ 구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Finding a Job), ④ 관련 수업과 과외 활동(Courses & Extracurricular Activities), ⑤ 관련 펠로우십 목록, ⑥ 해당 이슈를 다루는 NGO의 목록 등이다.

## 5. 멘토링 프로그램

상급생, 교수진, 졸업생 멘토가 재학생의 공익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하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 스탠포드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한다.<sup>58)</sup> 다른 학교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이와 유사하다.

- 개요
  - 상급생, 교수진, 졸업생 멘토가 공익 진로 개발을 지원
  - 입학 오리엔테이션 직후부터 등록을 시작하여 1학년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
  -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교수, 펠로우, 학생으로 구성된 소그룹
- 교수진 멘토(Faculty Mentors)
  - 39명의 교수진 참여 (브로셔로 확인 가능)
  - 분야는 이주민, 공공정책, 정부, 형사법, 노동법, 국제법, 교육법 등 다양
  - 연중 진행되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학교 커리큘럼이나 여름인턴 등에 대해서 논의
- 학생 멘토(Student Mentors)
  - 공익 펠로우(Public Fellow): 공익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를 공익분야에서 시작하려는 3학년 학생을 공익 펠로우로 지명하여 펠로우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에게 맞춤형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고, 교수, 졸업생 혹은 현직자의 멘토링 기회 제공
  - 공익 어쏘(Public Interest Associates; PI Associates): 2018-2019년에 시작한 프로그램. 민간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공익 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함. 민간회사에서 공익 분야로 이직을 하는 방법, 공익적인 배경을 가진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한편, 공익 펠로우와 어소는 학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동시에 로스쿨 내에서 공익 활동을 장려하고, 신입생에게 멘토 역할을 함. 3학년 펠로우와 어쏘 외에 2학년 멘토도 있는데, 2학년 학생들은 학회, 동아리, 저널을 이끄는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 중. 3학년 펠로우(37명) 및 어쏘(11명), 2학년 멘토(53명)의 명단과 약력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sup>59)</sup>
- 졸업생 멘토(Alumni Mentors)
  -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졸업생과의 네트워크 기회 제공. 홈커밍 행사 등.

58) “Public Interest Mentoring Program”, SLS, <https://law.stanford.edu/levin-center/mentoring-program/> (2021. 2. 1. 확인).

59) 스탠포드 로스쿨의 한 해 정원은 180명이다.

## 6. 기타

### 가. 리걸 클리닉

로스쿨 재학생이 수업에서 배운 분석, 협상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활용하여 실제 사건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클리닉은 변호사가 지도·감독한다. 1학년을 마친 로스쿨생이 학기마다 등록을 하는 시스템으로, pass/fail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하버드 로스쿨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sup>60)</sup>

시기	인정 학점	주당 업무 시간	총 업무 시간
학기 중	2	8	96
	3	12	144
	4	16	192
	5	20	240
겨울 방학 중	2	Full-time	96

이 때 학생들은 한 번에 하나의 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전 학기를 통틀어서 학기 중에는 최대 5개의 클리닉에, 방학 중에는 최대 2개의 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참여했던 클리닉에 다시 등록하여 이어서 일을 하거나 심화 학점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은 로스쿨 내의 클리닉에 참여하지만, 외부와 연계된 클리닉도 많이 있다.

### 나. 프로보노 프로그램

로스쿨 재학생이 지역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NGO, 정부기관, 리걸클리닉이 협력하고, 모든 프로젝트는 변호사가 감독한다.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참여하거나, 교내 프로보노 센터와 연계된 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리걸 클리닉에 참여하는 시간도 프로보노 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이외의 프로보노 시간은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학 기간 동안 수십 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학교도 많이 있다.<sup>61)</sup>

### 다. 잡 서치 툴킷

60) Harvard Law School, "Handbook of Academic Policies 2020-2021", 56.

61) 예를 들면 스탠포드의 경우 50시간 이상의 프로보노 활동을 하여야 하고, 50시간 이상 Pro bono Distinction, 150-299시간 High Distinction, 300시간 이상 Highest Distinction을 수여한다.

로스쿨에 재학하는 동안 구직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 준비와 탐색 방법, 이력서와 인터뷰 팁을 제공하는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툴킷이다. 하버드,<sup>62)</sup> 컬럼비아,<sup>63)</sup> UCLA<sup>64)</sup>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 로드맵: 학년별로 할 수 있는 활동 안내, FAQ, 공익 분야별로 할 수 있는 활동 안내
- 툴킷
  - 타임라인, 이력서 및 지원서, 인터뷰 팁, 네트워킹
  - 공익 직역과 이슈 리스트
- 정부 부처, 민간 공익 법률사무소, 펠로우십, 인턴십 등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가 있음.

### 라. 공익 커리어 페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Equal Justice Works 커리어 페어<sup>65)</sup>가 유명하다. 매년 10월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로스쿨생 1,400명 이상과 (인턴, 파트타임, 풀타임 등) 로스쿨생을 채용하려는 공익 단체, 정부 기관의 인사가 200명 이상 참여한다. 워크숍, 이력서 상담, 네트워크, 인터뷰 등이 이루어진다. 각 학교별로 각자의 커리어 페어를 주최하기도 하지만, EJW 커리어 페어에 참여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지원하기도 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미국 중서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Midwest Public Interest Law Career Conference(MPILCC)가 있다. 일리노이주 뿐 아니라 인디애나,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등 미국 중서부 주의 로스쿨 학생들이 모두 참여 가능한 이 콘퍼런스에는 일리노이 및 중서부의 주 단체들과 주 정부, 법원 등의 담당자가 방문해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학생들은 이력서, 커버레터, 성적표 등을 가져와 인사 담당자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시카고의 6개 로스쿨이 중심이 된 CALSC(Chicago Area Law School Consortium)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행사로, CALSC는 MPILCC 외에도 중서부 지역의 공익 분야 법률 지원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sup>66)</sup>

---

62) “Job Search Toolkit”, OPIA, <https://hls.harvard.edu/dept/opia/job-search-toolkit/> (2021. 2. 1. 확인).

63) “Public Interest Job Search Toolkit”, Social Justice Initiatives Columbia Law School, <https://www.law.columbia.edu/sites/default/files/2020-09/JobSearchToolkit2020.pdf> (2021. 2. 1. 확인).

64) “Public Interest Career Advising & Guides”, UCLA Law School, <https://law.ucla.edu/life-ucla-law/careers/office-public-interest-programs/public-interest-career-advising-guides> (2021. 2. 1. 확인).

65) Equal Justice Works 2020 Conference and Career Fair, <https://www.equaljusticeworks.org/conference-and-career-fair/about/> (2021. 2. 1. 확인).

## 7. 소결

한국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200년 이상의 로스쿨 역사를 가진 미국에 비해 공익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미국과 형태와 지원의 정도는 다르나,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sup>66</sup>이 시초가 된 공익변호사 급여 지원 제도, 로펌이 후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펠로우십 제도 및 로펌들의 공익인권 공모사업, 변호사협회 차원의 공익변호사 지원(서울지방변호사회<sup>67</sup>의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로스쿨 차원의 펠로우십 제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펠로우변호사 지원) 등 한국의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변호사의 양성·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들을 충분하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다양한 경험과 제도를 갖춘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급여의 수준을 높여서 공익변호사들의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공익진로로 진입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익진로로 진입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유는 각 기관/단체마다 그 변호사를 채용할 인건비를 마련하기가 힘든데, 막상 공익변호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곳은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학비 탕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하여 급여와 상관관계를 가진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로스쿨 학생들 역시 비싼 학비와 학자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졸업 후 바로 공익 진로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공익변호사의 지원과 양성을 위하여 연방 및 주 정부부터 학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특히 연방 차원에서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학자금 지원의 폭을 넓히고 특히 공익 분야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남은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 진로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연방의 프로그램 외에도 로스쿨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학자금 상환을 지원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상환 지원 외에도 졸업 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

66) MPILCC, <http://www.mpilcc.org/> (2021. 2. 1. 확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행사는 2월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할 수 있는 펠로우십 제도도 다양하다. 로펌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제공하는 펠로우십(스캐든 펠로우십),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펠로우십(EJW 펠로우십),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펠로우십(Immigrant Justice Corps 펠로우십, Justice Catalyst Fellowship 등), 그리고 로스쿨에서 자·타교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교내 펠로우십 등 펠로우십의 재원과 형태는 다양하며, 따라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할 의지가 있다면 졸업 후 1~2년간은 활동비의 걱정없이 공익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펠로우십 제도가 대부분 활동기한의 제한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수혜자의 8~90%가 활동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만큼 그 차이를 잘 분석하여 한국의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익 단체의 채용 정보와 관련해서는 로스쿨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주요 로스쿨은 공익 진로를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공익 진로 설계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공익 진로 매뉴얼을 제공하여 정부, 시민사회, 민간 공익 법률사무소, 국제기구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며 교수 및 졸업생 멘토가 재학생에게 공익 진로에 대해 자문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공익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그 외에도 로스쿨, 지역사회, 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공익 커리어 페어에 참가하여 졸업 전에 변호사의 공익 활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국제기구들이 많은 미국의 동부와 인구가 많아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익 활동의 기회가 적은 미국 중부에서는 별도의 공익 커리어 콘퍼런스인 Midwest Public Interest Law Career Conference(MPILCC)를 운영하며 이 지역 학생들의 공익활동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역시 수도권 외 지역의 공익변호사 지원이 특히 미흡한 한국에서 참고할 만하다.

## VI. 한국 공익 진로 현황 및 진로개발 관련 프로그램·활동

### 1. 한국 공익 진로 개관

이 연구에서는 일단 조직구조(비영리, 영리) 및 재원의 출처(민간, 정부위탁, 시민 후원, 로펌후원)에 따라 공익 진로를 구분하여 미국 로스쿨에서 말하는 민간공익로펌/법률사무소가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익 진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기관과 검찰, 로클릭은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공익전업변호사들에 대한 연구조사는 진행된 적이 있으나 민간공익로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2019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에서 두어 곳의 공익 병행 법률사무소를 포함하여 현황을 조사하였고, 공익에의 욕구와 업무 병행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공익변호사들이 공익 진로를 선택한 이유, 어려운 점, 조직구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위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9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에서 공익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가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에 맞아서’가 13.5%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고 답변했다.<sup>67)</sup> 현재 단체에서 일하게 된 배경을 조사한 결과, 1순위가 ‘이 일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보고 지원했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채용공고를 보고’가 45.7%, 3순위는 ‘실무수습 등 이전부터 단체와 관계가 형성되어서’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중 순위로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보고 지원함’이 125점으로 1순위, ‘채용공고를 보고’가 92점으로 2위로 나타났다.<sup>68)</sup>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공익변호사 지인 소개 및 추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구성원들과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 및 다루는 의제가 다양하고 활동가 중심의 조직이라서, 희망하는 활동분야의 선배가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접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연고 등이 있었다.

67)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40.

68)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85.

단체 내에서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힘든 점으로 가장 1순위로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2순위가 ‘변호사업무에 특수한 실무들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점’, ‘변호사·활동가로서 장래가 불투명해서’가 3순위로 나타났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19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 저임금일수록 단체 근무 지속 의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9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급여 수준과 단체의 지속 근무 희망 의사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성은 찾지 못했다.<sup>69)70)</sup> 또한 스탠포드 로스쿨의 연구에서도 미국 공익변호사들의 급여도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는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낮은 급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sup>71)</sup>

2019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에서는 예비 법조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각 공익진로별 장단점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9 조사에서 재정 수입원의 종류(시민후원, 로펌후원, 보조금, 수입료)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장단점이 조사되었고 이 항목을 통해 유형별 공익진로 장단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변호사의 인건비가 모든 유형을 막론하고 채용 확보에 있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이며, 인권지원 영역에 있어 인건비는 곧 사업비로서의 성격을 띠는데 그 사업비가 어느 곳에서부터 오느냐에 따라 활동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수입원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sup>72)</sup>

먼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의 경우, 목적이 분명하고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유용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았고, 단점으로는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처리가 많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의 경우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시민 후원금’의 경우 장점으로 단체의 가치 확산이나 활동을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공익활동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한 점, 재정의 독립성과 다원화의 점,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기부금 관련 행정업무 처리나 후원자에 대한 소식 공유 등 부가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고, 기부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및 기존 후원자의 지속적인 관심 유지와 노력이 필요한 점을 들

69) 위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100-101.

70)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86.

71) Deborah L. Rhode, “Public Interest Law: The Movement at Midlife”, Stanford Law Review Volume 60, Issue 6, (2008). 2059-2062.

72)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75-78.

었다. 또한 후원이 잘되는 활동만을 부각하게 되는 경향이 단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로펌·법인후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한 모금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한 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용이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공익 활동 수행 범위가 제약되고, 독립적인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이해충돌의 가능성과 로펌·법인 구성원의 반발 가능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재원의 한계와 재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다른 NPO 기금’의 경우 의미 있는 사업 진행에 있어 긴급한 수혈이 가능하고 다른 NPO 지원사업 공모나 선정 시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반면, 기금 자체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인 점, 공모·선정지원금은 그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것(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어려움)을 단점으로 들었다. 또한 정산에 있어서의 행정 실무도 단점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임료 및 자문비(소송구조비 포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단체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당사자가 아닌 연대단체나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단체의 경우 수임료 및 자문비를 내부 구성원이 나누어 갖지 않고 단체 기금으로 축적해 추후 단체가 계획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단점으로, 개별사건 처리가 많아 실제 중요한 현안이나 제도개선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명목상 수입으로 회계처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송구조비에 대한 국세청 신고 문제(세금 부과)가 발생하고, 행정업무 과잉과 구조사건 심사탈락이 잦은 것이 단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재원의 종류로는 강연, 기고, 연구비와 연대단체 분담금, 후원금(단체, 개인)이 있고, 공익재단과 국립대학법인의 해당 예산,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 등도 있었다. 그 외 카페수입이나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이 있었다.

기타 재원의 장점으로는 강연, 기고, 연구비의 경우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공익법률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안정적인 운영과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었다. 특정 목적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공익변호사들의 그러나 기타 재원의 단점으로는, 업무량의 과중이나 일반적인 공익소송이나 공익자문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재정 규모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재원을 제공하는 집행부의 성향(인권친화적 여부)에 따라 지원의 폭이 널뛰기할 수 있으며, 단체 독립성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일 수 있고, 재정

의존 심화에 따른 사업영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 2. 공익 진로 활동 내용

### 가. 비영리단체 소속 변호사(다양한 비영리공익기관)

#### 1)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sup>73)</sup>

##### 가) 개요

공익변호사는 여성, 장애인, 아동, 이주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빈곤, 인신매매, 노동, 환경, 사회적경제 등의 주제에서 다양한 존재지반(방식)을 가지고 일한다. 그 중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는 변호사들이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직접 설립하여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sup>74)</sup> 보통 ‘공익변호사단체’라고 분류되는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단법인 동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사단법인 두루 등이 있다.

변호사가 중심의 비영리단체에서 상근변호사로 일하는 경우 장점으로는, 소송에 대한 내외적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변호사인 상근자들과 함께 일하다보니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빠르고 꼼꼼한 일처리가 가능해 진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변호사가 직접 다양한 행정업무도 함께 맡게 되면서 변호사 고유의 업무에 대해 집중하기 어렵고, 업무가 과중한 점,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오히려 확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sup>75)</sup>

##### 나) 활동방식면

#### (1) 법률상담·자문에서 공익기획소송까지<sup>76)</sup>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경우, 다양한 영역에서 당사자들의 반

73)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는 대표자가 변호사이거나 구성원의 대다수가 변호사인 단체라고 정의하였다.

74)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17.

75)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61.

76) 이 경우, 비영리단체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직접 법률상담과 자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송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개인법률사무소 등으로 수임 받아 수행한다.

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법률상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행정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신청 지원(난민 인정신청서 작성부터 난민면접 동행까지), 법률자문 이후 소송대리까지 모든 법률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가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특성으로는 공익기획소송을 활발히 수행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공익기획소송’이란 개별적인 권리 구제에서 나아가 제도적·사회적 영향력(임팩트)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을 말한다. 변호사 중심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소송 중 어떤 소송을 ‘공익기획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견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료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소송을 기획하여 여러 (공익)변호사단체들이 공동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동안 많은 공익기획소송이 진행되어 왔지만, 2020년 선고된 소송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심혈관계 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무리한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의 위법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일명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또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가 2020년 수행한 소송의 주요 성과<sup>77)</sup>로는 다음과 같다.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한 공익소송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송,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용시설 도서반입금지처분 취소소송, 코로나19 기지국 정보수집행위 위헌소송을 수행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소송, 법무부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른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해태 혹은 일탈·남용에

77)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법조공익모임 나우, “2020 공익변호활동보고서”, (2020).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sup>78)</sup>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사건 피해자 형사절차 지원, 정신장애인 32년 장기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경우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인정, 인신매매피해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인용, 성폭력피해 이주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경우, 성매매 광고죄로 기소된 성매매여성을 위한 형사지원,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진정 산재 소송, 한국국적 친부모에 대한 인지청구, 이주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재단법인 동천의 경우,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양육비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관련자의 명예훼손 피소사건을 수행했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의 경우, ‘태움’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도 했다.

## (2)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입법운동

법률지원 과정에서 얻은 깊이 있는 통찰로 연구조사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한다. 이는 개별 권리 옹호활동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며, 법 해석의 테두리, 한계를 넘어선 사회적 변화를 일구는 것이기도 하다. 개별 사건에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하다보면 기존 법·제도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거나 현실과 어긋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인권침해 영역은 법·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경계선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공익변호사는 그 경계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기존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입법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연구조사는 입법운동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입법운동은 해당 이슈를 현장에서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며, 관련 연구자와 공익변호사단체 등이 결합하여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2월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단체의 경우, 연구조사와 입법운동의 주제 역시 다양하다. 예를 들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경우, 지역 유일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

<sup>78)</sup> 공익법센터 어필의 경우, 이주사례연구모임 ‘2021디딤돌걸림돌판결집’ 선정 과정에서 위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9누65780)을 별도로 확인하였다.

체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이주노동자 실태조사 혹은 농어업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와 그 외 노인빈곤연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주로 해당 주제와 관련한 연구조사와 입법운동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난민의 경우,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인권센터를 운영 중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인권 관련 연구조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경우에는 센터 및 개별위원회 등을 통한 입법감시활동과 함께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발간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2020년 법·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연구조사와 입법활동을 개별 단체별로 제시하였으나,<sup>79)</sup> 입법운동과 연구조사 활동은 당사자,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공익변호사단체, 연구자 등이 함께 일구어내는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주민권 전반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센터 친구, 원곡법률사무소, 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화우공익재단, 법무법인 동인,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조직하여 활동하는 <이주민권사례연구모임>이 느슨하지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매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평석>, <고용허가제 매뉴얼 다시쓰기> 등의 공동연구 대응을 함께 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에 송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폭로 및 공공성 확보 촉구운동,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의 반복적인 실패> 보고서, <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sup>80)</sup>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TF 활동, 성소수자 난민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지원 법령 개선 활동, 코로나19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공동제작하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20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활동,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공동제작하였다. 법조공익모임 나누는 ‘해외입양인의 친생부모 관련 정보

79) 위 2020 공익변호활동보고서 참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개별단체별로 활동을 제시함에 따라 그 양식에 의존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80) 공익법센터 어필의 경우, 어필 홈페이지 ‘연구와 입법운동’에서 별도로 확인하였다.

공개청구권에 대한 연구’ 등 공익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였다. 사단법인 온울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치매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담당자를 위한 후견사무메뉴얼 및 핸드북>을 발간하였다. 사단법인 두루의 경우 장애인의 호텔, 카페, 편의점 등 접근권 개선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한국법제연구원이 발주한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 기본법제 분석> 연구를 수행했으며, 오랜 기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입법운동을 펼쳤던 성착취피해아동을 위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민법 징계권 개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률에 대한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정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 비판 및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한 논평 발행과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였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로 보편적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활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산하 난민법 TF 난민법 개악 저지활동,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주관 <2020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 제작에 참여하였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주글로벌컴팩트 가이드북 집필, 다문화가정 가족관계등록 이해 길잡이 집필, 통합놀이터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 장애인 공연장 안전 연구,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연구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은 <인도주의 물품 지원과 유엔 대북제재 면제 절차 연구-북한 장애아동 특수학교 지원 협력사업 사례의 적용>, <장애인 장례문화 개선방안 연구: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지원하였다.

### (3) 국제연대활동

국제 영역을 특화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국제연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등은 다른 관련 인권단체들과 협업하여 유엔인권메커니즘 등을 활용한 국제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인권기준을 기초로 정부 정책을 상시적·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국이 국제인권규범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기구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 적극 대응하면서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한다. 다양한 국제심포지엄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해 한국의 인권현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도 한다. 특히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경우,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단체와의 연대활동도 하고 있다.

#### (4) 단체별 활동방식

단체 각각의 설립 배경과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활동방식’이 매우 다양해,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웠다. 먼저 주요활동 자체가 단체의 존재 목표와 닿아있는 경우가 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사랑샘재단이 이에 해당한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경우, 변호사의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네트워킹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랑샘재단의 경우, 청년공익변호사 비영리공익 우수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공익변호사의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소송지원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법률지원 방식에 국한되는 접근을 넘어 다각도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풀뿌리 후원 모델 단체의 경우, 소송지원 이외의 사업 진행은 재정구조와도 직결되는데, 단체의 관리비용 혹은 인건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로펌이 후원하여 설립된 공익단체의 경우, 활동방식을 크게 공익법률지원활동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공헌활동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로펌 또한 일종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관련 비영리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과 비영리단체에 직접 기부를 하기도 하며, 연탄나르기 등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곳도 있다. 로펌이 후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단법인 두루와 재단법인 동천을 제외하고 평균 상근변호사 수는 1명이다. 상대적으로 상근변호사 인원수가 많은 사단법인 두루와 재단법인 동천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단체들과 협업하여 연구조사, 입법운동, 교육활동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3] 변호사 중심 비영리단체의 변호사 수와 지역, 활동방식

단체명	변호사 수 <sup>81)</sup>	지역 <sup>82)</sup>	활동방식 <sup>83)</sup>
공익법센터 어필	5	서울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홍보와 교육(로스쿨 실무수습), 연대활동,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공익변호사와	3	광주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홍보와 교육(로스쿨

함께하는 동행			실무수습), 연대활동, 관련 사업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9	서울	공익소송, 법률자문, 연구와 입법운동, 홍보와 교육 (공감인권법캠프, 로스쿨실무수습), 연대활동, 공익 변호사자립지원사업, 국제인권센터 운영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	소송과 신청, 법 정책 연구, 교육(공익인권법실무학 교, 로스쿨실무수습), 연대활동
녹색법률센터	1	"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활동, 환경법률학교, 교육 (로스쿨실무수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	"	공익인권소송, 개혁과제와 입법활동, 사법개혁활동, 국제연대활동
법조공익모임 나우	1	"	소송과 신청, 공익변호사네트워킹지원, 연구활동지 원, 공익변호사역량강화지원, 자립지원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2	"	법률상담, 법률구조, 제도개선활동, 교육프로그램, 문화교류프로그램, 문화커뮤니티공간, 서남권글로벌 센터 운영
사랑샘재단	1	"	공익변호사 비영리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지원사업, 홍보
환경법률센터	2	"	소송과 신청, 제도의 연구와 법률 제개정활동, 입법 운동, 국제환경법률단체와 연대활동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3	"	공익단체법률지원, 법률교육, 공익단체 협력, 법제 도개선,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
법무법인 동인	1	"	소송, 교육, 연구조사, 장학금 지원, 후원금 지원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1	"	소송과 신청, 교육 및 봉사활동, 사회적기업 지원사 업, 공익기관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긴급지원 및 자립사업
사단법인 두루	10	"	소송, 법률자문, 실태조사, 연구와 입법운동, 교육 (실무수습, 신입변호사 교육 등), 국제연대활동, 로 펌 공익활동 활성화 NGO연계활동
사단법인 선	1	"	소송, 법률자문, 법률교육, 장학사업, 봉사활동, 공

			익변호사단체사업지원, 공익기관지원사업
사단법인 오픈넷	2	"	입법운동, 국제연대활동, 소송 등 법적 지원 등
사단법인 온을	3	"	소송, 법률자문, 연구, 교육(멘토링 학교), 공익기관 지원사업, 장학금지원사업, 봉사활동
사단법인 정	1	"	소송, 법률자문, 연구와 교육, 공익기관지원사업, 봉 사활동
재단법인 동천	6	"	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법제도정책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활동, 공익단체지원사업, 예비 법 조인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장학사 업, 봉사활동, 인식개선활동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2	"	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인식개선활동, 연 구와 교육, 봉사활동

#### 다) 주제면

변호사 중심 비영리단체의 활동 영역을 한눈에 살펴보고자 활동주제 별로 표를 만들었다. 대다수의 단체가 최소 2개 이상의 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활동주제는 단체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장애, 이주와 난민(인신매매 포함),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변호사 중심 비영리단체의 활동주제

활동주제	단체명 <sup>84)</sup>
이주와 난민,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 <sup>85)</sup>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법무법인 동인

81) 2021. 2. 1. 기준으로 상근하고 있는 변호사 수를 기재하였다.

82)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83)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표현하고 있는 활동방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정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장애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법무법인 동인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을 사단법인 정 재단법인 동천
여성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정
성소수자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법무법인 동인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온을 사단법인 정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취약 노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기업과 인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빈곤 복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동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환경	녹색법률센터 환경법률센터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사회적 경제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재단법인 동천
공익변호사·단체 지원 <sup>86)</sup>	법조공익모임 나우 사랑샘 재단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재단법인 동천
탈북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재단법인 정 재단법인 동천
성년후견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온을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 소외계층	사단법인 정
지적재산권, 온라인 망 중립	사단법인 오픈넷
한센인권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라) 재정면<sup>87)</sup>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경우, 풀뿌리 후원 방식<sup>88)</sup>이거나, 로펌

84)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발간하는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에 언급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음을 밝힌다.

85) 공익법센터 어필의 경우, 상세하게 난민, 구금이주민, 인신매매,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86) 공익변호사자립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형식의 인건비 지원 혹은 NPO법률지원단과 같은 네트워크 지원원을 모두 포함한다.

87) 정확한 정보를 위해 이후 추가 심층면접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8) 풀뿌리 후원의 의미는 시민들의 후원을 의미하고, 단체 후원의 의미는 기업, 로스쿨, 제3기관 으로부터

등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후원모델의 경우, 크게 개인후원과 단체후원을 통해 재정을 조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후원의 경우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나뉘며, 단체후원의 경우 기업, 로펌, 법학전문대학원, 제3기관 등이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경우, 아름다운 재단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시작했고 자체 풀뿌리 모금을 확장해 점차 성장한 결과 2012년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독립하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의 경우,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예비 법조인들이 함께 가치와 원칙을 만들고 처음부터 풀뿌리 후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공익변호사 활동을 희망하는 동기의 급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재정조달 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풀뿌리 후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연구용역이나 로펌 등 기업 후원 등이 일부분 포함되기도 한다. 각 단체의 내부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 분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래 표는 각 단체의 재정조달 방식 중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위주로 작성하였다.

[표5] 변호사 중심 비영리단체의 재정조달 방식

단체명	재정조달 방식
공익법센터 어필	풀뿌리 후원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풀뿌리 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풀뿌리 후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풀뿌리 후원
녹색법률센터	풀뿌리 후원 <sup>89)</su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입회원비
법조공익모임 나우	풀뿌리 후원
사랑샘 재단	풀뿌리 후원 <sup>90)</sup>
환경법률센터	풀뿌리 후원 <sup>91)</sup>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로펌 후원

터 후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법인 두루	로펌 후원 <sup>92)</sup>
사단법인 선	로펌 후원
사단법인 온을	로펌 후원
사단법인 정	로펌 후원
재단법인 동천	로펌 후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로펌 후원

## 2)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sup>93)</sup>

### 가) 개요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는 앞서 살펴 본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먼저 단체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변호사 중심 단체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체가 있지만, 현재 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는 활동가 중심 단체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찾을 수 없었다. 활동방식면에 있어서는 단체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구성원의 대다수가 비변호사인 활동가이다 보니 소송 등 법적 지원보다 정책 자문이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분야의 현장 활동가,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에 분야별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정책을 제안하거나 관련 캠페인 진행,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제면에 있어서 활동가 중심의 단체는 변호사 중심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다양한 영역을 발굴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정한 주제에 특화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89)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므로 법률사무소 수입이 발생하나,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상근변호사의 급여 등 내부운영비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90) 재단법인 사랑샘 정관 제30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수익사업의 이익금
3. 기부금 등 기타 수입금

91)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므로 법률사무소 수입이 발생하나,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상근변호사의 급여 등 내부운영비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92) 사단법인 두루의 경우, 로펌 후원으로 설립되었으나,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93) 본 연구에서는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대표자가 활동가이거나 구성원의 대다수가 변호사가 아닌 활동가인 단체라고 정의하였다.

경우 특화된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정면에 있어서는 변호사 중심 단체의 경우 풀뿌리 후원뿐만 아니라 로펌 등 기업의 후원을 받는 단체도 많으나, 활동가 중심의 단체는 대부분 풀뿌리 후원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활동가 중심 비영리단체에서 활동가와 함께 일하는 변호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한 방식과 시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변호사와 활동가 간에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단체의 활동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슈 및 정보 파악에 용이하다는 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법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점, 각자의 전문성에 맞는 업무분장이 가능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 다양한 시각에서 단체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활동가의 법률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업무 진행 또는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 업무 분담에 있어서 활동가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특히 활동가 중심 단체에서 상근하는 변호사가 1인인 경우, 활동가들과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 교류가 원활하지 않거나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sup>94)</sup>

#### 나) 활동방식면<sup>95)</sup>

##### (1)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입법운동

활동가 중심의 비영리단체 대다수는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발하게 법·제도 개선 운동, 입법운동을 하고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 등과 함께 실태조사연구와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을 펼쳐 2020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실제로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고, 그 밖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아시아의 창은 다문화가정 가족관계등록 이해 길잡이 제작 참여, 폭력피해이주여

94)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62-63.

95) 각 단체별 활동은 법조공익모임 나무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발간한 '2019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 및 '2020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성 법률개정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창은 2019년 ‘이주아동 보육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이주아동의 보육실태 및 권리, 이주민 부모와의 소통, 갈등 해결 등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 및 보육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및 재벌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치며 권력남용 및 부정 부패를 고발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2) 국제연대활동

활동가 중심의 단체의 경우 주요 활동 방식으로 국제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많다. 사단법인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는 로HING야 집단학살 기록 사업 및 로HING야 기록활동가 역량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생존자를 대리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및 IIMM(미얀마 독립조사 메커니즘)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등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내 아동권리 옹호단체들과 함께 자유박탈아동 한국실무그룹을 추진하여 국제적 이슈를 국내에 알리며,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3) 법률자문에서 소송대리까지

활동가 중심의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상근 혹은 비상근·자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sup>96)</sup> 대부분의 활동가 중심의 단체는 단체별로 특화된 전문성이 있는 주요 활동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법률상담과 자문, 소송 등의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과 더불어 기업을 상대로 직업병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 및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수능 출제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수능 출제 검토위원회에 검토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재를 키운

96) 이 경우, 비영리단체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직접 법률상담과 자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송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개인법률사무소 등으로 수임 받아 수행한다.

다는 명목 하에 소위 명문대 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이러한 행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소송, 퇴거·구금 이의신청·소송 등을 조력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2019년에 법무부가 주도한 난민 면접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 (4) 기타

활동가 중심의 단체들은 각 주제별, 이슈별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입법운동, 법률자문, 소송 등 법적 지원, 국제연대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활동에는 교육, 캠페인, 기자회견등과 같은 언론 대응, 영화제 등 다양한 방식들이 활용된다.

교육 및 캠페인의 경우,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및 관련 책자 등의 발간을 통해 공익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등에 이바지 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권리를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포럼을 진행하고, 세계 난민의 날, 광주아시아포럼,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 평등행진 등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 (5) 단체별 활동방식<sup>97)</sup>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경우 변호사 중심의 단체에 비해 좀 더 유연하게 다양한 상상력과 추진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제아동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아시아의 창 등 대부분의 단체에서 인권 내지 권리의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경우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등은 법률지원 이외에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과 생계 및 의료, 주거, 긴급비용, 심리상담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면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마음자

97) 아래 표에 예시로 제시한 단체 외에도 공익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는 활동가 중심의 비영리단체가 있을 수 있다.

립을 위한 ‘T-Go’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성소수자 주거지원 ‘홈 프라이드 홈’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표6] 활동가 중심 비영리단체의 변호사 수와 활동방식

단체명 <sup>98)</sup>	변호사 수 <sup>99)</sup>	활동방식
국제아동인권센터	1	제도 개선 활동, 교육, 네트워킹, 국제연대활동 등
난민인권센터	1	소송과 신청, 행정 감시, 입법 운동, 시민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없음 <sup>100)</sup>	연구와 입법운동, 캠페인, 연대활동, 소송 등 법적 지원 등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	입법운동, 소송 등 법적 지원 등
아시아의 창	1	연구와 입법운동, 소송 등 법적 지원, 국제연대활동. 교육(사람책,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이주민 지원, 보육 사업, 의료 지원 등
사단법인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1	국제연대활동, 소송 등 법적 지원 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	국제연대활동, 자문, 교육 등 <sup>101)</sup>
세이브더칠드런	없음 <sup>102)</sup>	권리옹호활동, 국제연대활동, 교육, 캠페인 등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소송, 법제개정 및 정책 제안, 교육,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
참여연대	없음 <sup>103)</sup>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 제도 개선운동, 입법운동, 캠페인, 소송 등 법적 지원, 국제연대활동 등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핑동	1	상담 및 위기지원, 인권옹호 활동, 제도 개선 운동, 연구, 교육, 캠페인

98) 변호사 수는 각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을 기재하였다. 정확한 변호사 수 및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인원 수 비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99) 상근변호사의 수로, 2021. 2. 1.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00) 2019. 6. 기준 상근변호사가 1명이었으나, 2021. 2. 1. 현재 상근변호사는 없으며 비상근 형태로 활동변호사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내변호사’로 표기되어 있다.

102) 2016년까지 권리옹호부에서 변호사가 근무하였다.

다) 주제면

활동가 중심의 비영리단체는 변호사 중심의 단체에 비해 널리 알려진 활동주제를 넘어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정한 주제에 특화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7] 활동가 중심 비영리단체의 활동주제

주제	활동 단체
경제금융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	참여연대
교육 문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제인권, 난민 인권, 국제 연대	난민인권센터, 참여연대,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아시아 분쟁 피해자, 활동가 지원)
노동	반올림(직업병 피해 노동자 인권),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망 중립성 등 정보인권	사단법인 오픈넷
민생경제	참여연대
사법감시, 의정감시, 행정감시	참여연대
사회복지, 빈곤 문제, 홀리스	참여연대
아동 인권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주민 인권	아시아의 창
조세재정	참여연대

라) 재정면<sup>104)</sup>

활동가 중심의 단체는 대부분 풀뿌리 후원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103) 2019. 6. 기준 상근변호사가 1명이었으나, 2021. 2. 1. 현재 상근변호사는 없다.

104) 각 단체의 재정 조달 방식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초로 기재하였다. 정확한 재정 조달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 조사되었다. 풀뿌리 후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가 중심의 단체에서 일하는 공익변호사의 경우, 풀뿌리 후원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 중심의 단체에서 일하는 공익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모금 활동을 자신의 주요한 업무로서 맡아야 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8] 활동가 중심 비영리단체의 재정조달 방식

단체명	재정 조달 방식
국제아동인권센터	풀뿌리 후원 및 제3기관 후원
난민인권센터	풀뿌리 후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풀뿌리 후원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풀뿌리 후원
사단법인 오픈넷	풀뿌리 후원
아시아의 창	풀뿌리 후원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풀뿌리 후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풀뿌리 후원 및 제3기관 후원
참여연대	풀뿌리 후원

## 나. 법령 등 위탁 단체

### 1) 개요

법령 등 위탁단체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법인 소속 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서울시, 경기도, 경기북부, 전남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이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개정(제10조의2 신설, 2019년 7월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흡수되었고,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현재까지 상근변호사가 없는 실정이다. 권리옹호활동은 법률지원활동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장애영역 외에도 사회적약자를 위한 권익옹호기관에서 변호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 활동방식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중앙 및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차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인권보장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와 같은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장애인학대 처벌 실태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활동,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sup>105)</sup>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경기, 서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달리 상근변호사가 없으나, 촉탁변호사 계약을 통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들과 소송 등 법률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sup>106)</sup>는 복지소외계층 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제의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립되었다. 복지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민과 복지담당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공익소송 및 공익입법, 복지 관련 법제도 개선, 복지법률교육, 법률구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민에 대한 복지법률 정보 및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고, 복지 관련 법제도 개선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연간 약 60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리스피해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소송,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sup>107)</sup>는 현재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연합회 등 11개의 단체가 함께 소비자의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결

105) 위 2020 공익변호활동보고서, 68.

106) 위 2020 공익변호활동보고서, 52-53.

107) 위 2020 공익변호활동보고서, 72.

합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단체의 발전을 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말하는 소비자3법의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9] 법령 등 위탁단체의 활동방식

단체명	활동방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률상담, 소송, 연구, 자료개발 및 홍보, 교육, 정책토론회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률상담, 소송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률상담, 소송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률상담, 소송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상담, 소송, 법제도정책토론회, 교육, 복지법률안내서 출판
양육비이행관리원 <sup>108)</sup>	법률상담,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제도연구, 교육 및 홍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송, 교육, 입법운동, 분쟁조정

### 3) 주제면

현재 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는 법령 등 위탁단체 중 홈페이지 등으로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애인과 복지, 아동(양육비 이행 확보), 소비자 등으로 활동주제가 다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10] 법령 등 위탁단체의 변호사 수와 지역, 주요 활동영역

단체명	변호사 수	지역	주요 활동영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서울	장애인 권익옹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경기	장애인 권익옹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경기	장애인 권익옹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4	서울	복지 일반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촉탁변호사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

10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도109)		
양육비이행관리원	10110)	서울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서울	소비자 권익

#### 4) 재정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sup>111)</sup>은 법령에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의 보조금 혹은 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이외 기관들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목적이 분명해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으로 인한 활동이 제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처리가 많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sup>112)</sup>

109)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동행 상근변호사 2명이 촉탁되어 활동하고 있다.

110)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속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 소속 법률지원부에 변호사 7명, 양육지원부에 변호사 1명, 가족상담본부 소속 이행개선부에 변호사 2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1. 2. 6. 확인)

1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제43조의6제2항 관련)

#### 4. 회계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12) 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77.

## 다. 영리와 공익 병행 모델(영리/수익 모델)과 노동조합 변호사

### 1) 미국의 정의와 우리의 정의 비교

미국의 로스쿨들은 공익 진로를 분류하면서 대체로 검찰/정부기관, 국선변호사, 비영리기관(국내 또는 국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버드나 스탠포드의 경우 여기에 더하여 민간<sup>113)</sup>공익로펌/법률사무소(Private Public Interest Law Firms)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버드 로스쿨 홈페이지에서는 민간 공익 로펌/법률사무소를 이렇게 분류 내지 설명하고 있다.

“민간 공익 법률 사무소는 다른 민간 법률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그룹이다. 그러나 공익 법률 사무소는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된 비전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사무소와 구분된다. 이러한 비전의 차이에서, 수입료를 청구하는 방식과 의뢰인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를 만든다. 일부 의뢰인은 지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 비전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및 청구와 관련된 원인을 더 강조하여 선택 될 수 있다. 슬라이딩 스케일 수수료, 성공보수 제도(contingent fee)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sup>114)</sup> 특정 법률 회사가 ‘공익 법률 회사’의 정의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항상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개별 기업의 분류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철학, 고객 및 사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버드 로스쿨의 설명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공익 로펌/법률사무소를 공익 진로로 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매우 광범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로펌/법률사무소 중 공익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유일한 비전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몇 가지 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2) 한국의 경우 - 공익 병행 모델

113) 이 번역 용어는 김주영 교수가 쓴 서울대학교 공익과인권,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한 로스쿨이 역할”, (2020)의 번역을 일단 그대로 썼다. 여기서 ‘Private’는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동시에 공익 사건이 아닌 사선(私選) 사건을 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114)

<https://hls.harvard.edu/dept/opia/what-is-public-interest-law/public-service-practice-settings/private-public-interest-firms/#tab1-3> (2021. 1. 25. 확인)

민간공익로펌의 운영 재원은 수입료와 자문비가 주를 이루고 이 재원을 내부구성원이 나누어 갖는다는 점이 비영리모델과 다른 점이다. 미국 일부 로스쿨들은 민간공익로펌을 분류함에 있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는지 여부, 공익 사건과 사선 사건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으나, 무엇이 민간 공익로펌/법률사무소인지를 가늠하기에 참고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사건의 비율이나 재원의 구분, 추구하는 비전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는 어려웠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병행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한국에서는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가)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와 시민공익법률상담소(1983 설립, 조영래)

1980년대까지는 소위 말하는 시국사건(국가보안법 사건 혹은 노동운동 관련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 사건들은 당해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소송들 중 일부분인 경우가 많았다. 법률사무소가 공익사건을 병행하는 시법적인 모델의 시초는 조영래 변호사님<sup>115)</sup>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뜻을 함께 하는 다른 변호사들<sup>116)</sup>과 함께 1983년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 및 시민공익법률상담소를 개소하여 민간 영리 모델이지만 공익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거의 첫 모형(이자 모범)을 보여주셨다. 시민공익법률상담소의 상담을 통하여 조영래 변호사님은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망원동 수재 사건, 여성 조기 정년제 사건, 상봉동 진폐증 사건, 대우 어패럴 사건, 보도지침 사건, 이외에도 여러 시국 형사사건을 진행하였다.

#### 나) 법무법인 다산과 다산인권센터<sup>117)</sup>

법무법인 다산은 1994년 경기 수원에 설립되었다.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 소재의 주공아파트의 분양가전환 분쟁을 대리하면서 ‘아파트시민학교’를 세워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법률학교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법을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내리기 위한 터를 닦는 공익활동을 병행해왔다. 법무법인 다산이

115) 이 연구에 기재된 다른 모든 변호사에게는 존칭을 붙이지 않았으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의 조영래 변호사님에 대해서만큼은 존경의 의미를 담은 존칭을 사용하겠다.

116) 천정배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윤종현 변호사 등이 전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었다.

117) the L, 2019. 7. 19.자 기사 “변호사가 세상을 바꾼다” 공익로펌 다산.

<http://m.thel.mt.co.kr/view.html?no=2019071709458296175>

기준에 공익활동을 병행해 왔던 다른 법무법인들과 조금 다른 점은, 1994년 설립당시부터 ‘다산인권센터’라는 부설기구를 두어 경기 남부 지역의 노동인권 운동을 주도하도록 독려하여 함께 성장하고, 2000년에는 다산인권센터가 비영리단체로 성장하여 분리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법무법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 남부 수원지역의 노동조합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와 결합하여 법무법인의 법률 대응과는 또 다른 인권영화제, 사회복지학교, 인권평화학교 등을 지역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시도

##### ■ 설립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근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약 10년간 있는 최정규 변호사가 2012년 1명의 신입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안산에 설립한 법률사무소이다. 2013년에 1명의 변호사가 더 결합하면서 3명이 되었다. 2018년에 2명의 변호사를 더 채용하면서 총 5명의 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

##### ■ 업무분야

이주노동, 재심사건, 장애인권, 난민 사건 등을 대응하고 있다.

##### ■ 활동방식(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무실 공유) 및 재원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최정규 변호사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지원 및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산 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관련하여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이주 인권 관련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등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재원은 수입료와 자문비로 구성되며 모든 수입을 공동으로 나누는 공산제이며 급여 이상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익 사건과 사선 사건의 비율은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블로그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공익 사건의 경우 당사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구조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연대체에서 법무법인 더함으로

#### ■ 설립과정

다방면의 공익법 분야에서 활동해 오던 양동수 변호사(당시 재단법인 동천)와 기업 자문, M&A 분야에서 일하며 프로보노 활동을 하던 이경호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지평)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영역에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을 설립하였다. 2015년 양동수 변호사가 재단법인 동천을 나와 2016년 법률사무소 와이엔로를 설립하였고,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은 2019년까지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 위한 기구 역할을 하였다가, 2019년 이경호 변호사가 법무법인 더함을 설립하면서 그 부설 센터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법센터로 이어진다.

즉 법무법인 더함의 모체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인데, 조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방식을 선택하여 변화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2021. 1. 24. 현재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는 9명이다.

#### ■ 업무분야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스타트업, 사회적 부동산, 공공정책, 법제 개선, 관련 소송

#### ■ 특이점

법무법인 내 별도의 사회적경제법센터, 공공정책법센터를 두고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작업한다.

마) 기타 공익 관련 법률사무소/법무법인

공익활동을 위하여 독립적인 법률사무소를 만들어서 활동하거나(법률사무소 보다, 법률사무소 생명, 장애인권법센터), 함께할만한 사람들을 모아 법무법인을 만드는 진로(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시민, 법무법인 자연, 법무법인 지향, 법무법인 해마루, 법률사무소 휴먼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sup>118)</sup>

118) 법무법인 해마루는 강제노동동원 피해사건, 간첩조작 재심사건 등 역사청산을 위한 재심사건들을 수행하고 관련 연대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장애 인권 영역 이외에 최근 공익연구활동지원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법무법인 덕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이주민센터 친구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 최근 젊은 구성원 변호사들 중심으로 청년 웹툰작가들이 부당하게 겪는 법률문제를 다루는 “웹툰작가의 변호사친구”라는 책을 발간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열기도 하였다. 법무법인 지향은 낙태죄 헌법소원 대리인단, 여성노동자 차별문제, 병역거부자 헌법소송 등을 이

이렇게 별도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개소하는 경우 수입료가 재정원이 되는데, 당사자로부터 수입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공익인권 사건들만을 수입하여서는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공익 사건을 주로 진행하고 공익 사건을 부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법률사무소 보다와 같이 아예 변호사 업무 이외의 곳(출판, 교육 등)에서 수입이 생기는 모델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이는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상정하기 어려운 조건일 것이다.

## 2) 소결론

공익 진로 자체가 전형적인 일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고, 공익 진로에서 전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거기에 더 나아가 공익 진로를 선택하여도 그 주제에 따라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그 행로가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공익 진로에 있어 전형적인 매뉴얼이 있기 어려우나, 이러한 영리와 공익 병행 모델을 통하여 공익 진로를 어떻게 모색해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 3) 노동조합 변호사

### 가) 개요

한국은 법령상 독일과 같은 산별노조가 발달하지 않은데다가 변호사법상 엄격한 동업금지 규정이 있는 제약으로 인하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자체적으로 법률가집단을 고용하여 의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법률적/재정적으로 독립하여 법무법인이 따로 설립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법무법인 여는’ (이하 ‘민주노총법률원’ 이라 함)이, 한국노총은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이하 ‘중앙법률원’ 이라 함)이 노조와 연결된 법무법인이다.

---

끝었다. 법률사무소 휴먼은 정치하는 엄마들 및 참여연대와 연대활동을 통해 교육, 청소년, 노동, 민생경제 관련 대응을 주요 지향으로 한다.

이러한 지향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개개 변호사의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 확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알아보는 어렵다.

## 나) 활동방식면

노조와 상시적인 회의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협업을 한다는 점이 다르며, 노동 문제에 대한 법률 대응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법률 교육, 연구 및 정책제언을 한다.

민주노총법률원은 2019년 12월 기준 변호사 37명, 노무사 20명이 함께하는 조직이다.<sup>119)</sup> 반면 중앙법률원은 2020년 4월 기준 4명의 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다.<sup>120)</sup>

비정규직 문제, 플랫폼 노동으로의 변화 등 급변하는 노동 문제들에 대하여 집중하여 끊임없이 공동의 힘으로 연구하고 법률지원하고 상담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갖는다.

## 다) 재정면

민주노총법률원은 2002년 4명의 변호사가 함께 설립하였다. 지금은 총연맹법률원, 금속법률원, 공공운수법률원 및 각 지역법률원으로 나뉘며 재정은 80%정도가 수입료, 20%가 자문비/연구용역비로 충당된다고 한다. 성과급이나 이익배당을 하지 않으며 적립된 금원은 연구사업 등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법률원의 재정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

119) 위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권두섭 변호사 인터뷰 중

120) 2020. 4. 24. 중앙법률원 채용공고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483>

## 라. 국선변호사<sup>121)</sup>

### 1) 형사 국선변호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제도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형사 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선정한 변호사를 말한다.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수는 2004년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해 10만 건 이상이며, 전체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피고인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33.51%이다.<sup>122)</sup>

국선변호인 선임 및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통과 후 법관 2인과 법원에서 지정한 외부인사 1인의 면접으로 채용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급여는 세전 60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위촉도 가능하다.

### 2) 피해자 국선변호사<sup>123)</sup>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사로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한다. 수사단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를 안내하고, 피해자 조사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한다. 재판단계의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 뒤 피해자 등에게 전달함과 더불어 양형 증거 및 탄핵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

---

121) 본 목차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형사 국선변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유사한 국선대리인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의 경우 전업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참고 : 국선대리인제도는 행정심판, 특허심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헌법소원심판 등을 청구하고자 하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행정청, 특허심판원, 헌법재판소 등은 국선대리인 또는 국선대리인 예정자를 모집하고 있다.)

122) 박해림, “국선변호인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535호 (2019. 1. 8.), 3.

123)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대검찰청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시스, ‘학대피해 아동·장애인에 국선변호인 의무화 추진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5\\_0001317429](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5_0001317429) (2021.1.25. 확인)

인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20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제59조의15 신설)으로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 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sup>124)</sup>

법무부는 2013년 7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발하면서 자격조건으로 법조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 보수조건으로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모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소속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일원화되었고, 2015년부터는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다.<sup>125)</sup>

#### 마.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1)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법률홈닥터로 직접 채용하는 것이며, 2020년 월 기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 65명이 배치되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전반과 관련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나,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지원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다.

##### 2)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원에 대응하여 전국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3개 지소로 조직되어 있다.

---

124) 2021. 6. 30. 시행

125) 신진희,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16.

### 3)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성폭력피해자, 한부모 가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및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와 같이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 및 변호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전업으로 활동하는 상근변호사는 1-2명 내외이다. 그밖에 신청을 통해 선정된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는 법률구조 신청인과의 상담과 수임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은 심급별로 사건유형 및 소송물가액에 따라 100만 원 내에서 지급되며, 변호사 보수의 경우 사건 종류에 따라 30만 원부터 120만 원 내로 지급된다.

### 3. 공익 진로 개발 관련 프로그램 · 활동 현황

#### 가. 공익 진로 관련 실무수습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재학 중 법무실습(1학점) 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외부 기관에서 실무수습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 공익단체<sup>126)</sup>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단체의 실무수습은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들에게 공익활동의 경험 및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되고 있다.

[표12] 공익 진로 관련 실무수습 현황

단체명	활동기간 127)	활동내용
공익법센터 어필	하계(4주) 동계(4주)	난민판례시스템 업데이트 및 관리 난민신청자 보호, 인신매매 예방 위한 법개정 운동 난민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 인신매매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외국인 보호소 방문 기타 리서치 및 보고서 작성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하계(3주) 동계(3주)	공익소송 기록 검토 및 작성 공익소송 재판 방청 공익인권 분야별 관련 리서치 연대회의, 토론회, 교육 프로그램 참관
공익인권법재 단 공감	하계(2주) 동계(2주)	세미나 참여 기관 방문 리서치
공익인권변호 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하계(4주) 동계(4주)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 업무
국제아동인권 센터	하계(2주) 동계(2주)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모니터링 및 대응 활동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 국내 아동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공익단체 및 관련 NGO와의 협력 및 교류
녹색법률센터	하계(2주) 동계(2주)	환경소송 판례 연구 환경법 특강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방문

126) 여기서 ‘공익단체’란 공익인권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변호사단체 등을 포괄하여 일컫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계(2주) 동계(2주)	민변(사무처) 프로그램: 민변 및 공익인권 분야 특강 모의기록 검토 및 작성 각 지도변호사 사무실 프로그램: 기록검토 및 작성(2건 내외), 법정방청(2건 이상)
법무법인 덕수 공익센터	하계(10일)	인권 법률, 공익 활동 강의 공익 소송 사건 포함 서면 작성 연습 법률상담 활동
법무법인 여는	하계(4주) 동계(4주)	과제 부여 및 강평 노동현장 방문 및 노동운동 활동가와의 만남 노동법 관련 각종 학술 토론회, 세미나 참가 법정 방청
사단법인 두루	하계(2주) 동계(2주)	공익소송 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 관련 리서치 공익인권법 관련 강의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재단법인 동천	하계(2주)	공익법률지원 공익인권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유관기관, 비영리단체 방문 기타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정의기억연대	하계(2주) 동계(2주)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자료 목록화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관련 한국어, 일본어, 영어 논문 정리 1990년대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중 한, 일 정부 법적대응 관련 소송, 판례 정리 번역 업무 등 협의에 따라 진행

## 나. 공익활동 공모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 공모전에 참여하여 관심 분야의 공익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공익 진로를 희망하는 다른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여 협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표13] 공익활동 공모전 현황

주최기관	공모내용	주요일정 <sup>128)</sup>	응모자격
법무법인(유한) 지평 및 사단법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된 공익인권 이슈에 관한 프로젝트 (프로젝트유형: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2020.10.-11. 접수 및 심사 2021.8. 프로젝트 수행	변호사, 권리옹호단체, 법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

127) 기간은 2019년도 기준으로, 향후 단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두루	연구)		학생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2020.1. 접수 후 발표팀 선발 2020.2. 발표대회 및 시상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최대 5명 이내 팀)
사랑샘재단 <sup>129)</sup>	- 청년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 매년 청년변호사상 시상	2020. 9. 공모 2020. 12. 발표	변호사
진실의 힘 · 법무법인 경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 사업 (영역: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 기후위기, 부정부패) 지원 내용: 우수 제안자에게 연구활동비 지원, 선정된 제안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 2020년 상반기에 별도로 진행할 공익소송 지원사업에서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소송 수행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2020.12. 제안서 제출 2021.1. 심사 후 선정 2021.2. 교육 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신청:~7.26.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 다. 공익 진로 관련 기금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기금이 있다. 펀딩 유형으로는 법조 동료들의 자조적 성격을 가진 기금과 활동단체와 협약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 일정 기간 주관 단체에 소속(펠로우 등)되어 활동하는 방식이 있다. 어떤 공익인권 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과 다르다.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자 하는 영역과 단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비 지원은 1-2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이후 자립을 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모 방식으로 진행 되므로 활동하고자 하는 영역이 뚜렷하지 않고 상근으로 일하고 싶은 단체가 정해지지 않아 공모지원서를 작성할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는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펠로우의 경우, 소속 단체에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지만, 소속 단체의 방향에 따라 활동에

128) 주요일정은 2020년 공모 기준임

129)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공모이기는 하나, 예비 법조인에게도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넣었다.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활동 기간도 2-3년으로 한시적이다.

현행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지원 활동비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부분적 활동비가 되거나 지속가능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활동비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법연수원 공익기금 외에 모든 제도가 1년 내지 2년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공익변호사가 자체적인 재정구조를 만들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지원을 받는 변호사는 공익활동 이외에도 재정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공익펠로우 사업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은 학교나 변호사협회가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위해 움직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들에서도 좀 더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14] 공익 진로 관련 기금 현황<sup>130)</sup>

기금명	주관기관 및 내용	진행현황
사법연수원 공익기금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동기 변호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법연수생들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매월 CMS방식으로 약정된 기금을 모아 기수별 공익전담변호사 1-2명에게 지원금을 지급	2011년부터 사법연수원 41기 감성펀드, 42기 낭만펀드, 43기 파랑기금, 45기 공익법률기금으로 조성된 기수별 기금을 통합하여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으로 운영 - 41기: 4명 - 42기: 2명 - 43기: 1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금으로 기금에 참여한 정회원이 매달 낸 기금을 모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학생 ‘기금학회’로 활동하며 모금 활동을 함	2012년 1기 졸업생부터 지원: 1명 2013년 2기 졸업생 일부 지원: 1명

130) 이곳의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취합한 것에 더하여 공익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구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한 것이므로 별도로 각주를 남기지 않고 참고문헌 부분에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두도록 하겠다.

		2017년 6기 졸업생 지원: 1명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신청을 받아 공익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선정하고 공익단체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선발된 공익변호사들은 지원내용에 따라 장애인/여성/이주·난민/아동/노인/빈곤 등의 공익단체에서 상근하면서 공익펠로우기금에서 2년 동안 인건비(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됨	2014년 2명의 공익변호사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3명의 변호사를 선정하여 총 15명의 변호사를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 소속되어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으로, 공익전업변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2명을 선발하여 2년간 매월 250만원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단체, 공익전업변호사 3자 간 협약체결	2019년부터 2명 지원에 이어, 2020년에도 2명의 공익변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공익법무분야로 진출하여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서 공익적인 법무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기회도 제공 5년차 이하 변호사를 대상으로 1년간(교육기간 포함) 임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1년 연장 가능	2020년 1명 지원을 시작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라. 기타 프로그램

공익단체 실무수습과 공익활동 공모전 외에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주최하는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012년부터 매년 개최참가자격: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법률가, 활동가 등)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하계 방학 기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기간: 2020. 8. 10. ~ 8. 21.)이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의 공익인권법학회의 연합체인 인;연<sup>131</sup>)이 주최

하는 ‘인;연 캠프’ 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예비 법조인을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인;연 캠프는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인권적 가치, 인권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선배 공익변호사와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도 주목할 만하다. 변호사의 다양한 활동방식을 소개하면서 공익활동을 왕성하게 펼쳐 온 변호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비 법조인이 공익변호사로서의 구체적인 전망을 그려볼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공익변호사모임이 주최하여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동계 방학기간에 ‘공익법무실습’ 을 진행하며, 공익단체에서의 실무수습과 공익법무실습 프로젝트 수행에 한하여 법무실습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 마. 소결

공익 진로 개발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단체 실무수습과 공익활동 공모전 등이 있고, 졸업 후 경제적인 문제로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공익 진로 관련 펀딩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공익활동의 경험을 통해 폭넓은 공익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단체 실무수습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선결 조건인 만큼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펀딩은 활동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공익변호사들에게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공익변호사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큰 반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익 진로 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며,<sup>132)</sup> 학생들은 이러한 지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외부의 공익단체 실무수습과 펀딩 등의 프로그램 이외에 교육과정에서 공익 관련 수업 과목의 개설, 임상법학을 통한 공익소송 참여, 공익 진로 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법학전문대학원이 공익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

131) 인;연은 2009년 8월 전국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연합모임을 모태로 만들어졌으며, 2011.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가 참여하는 연합체가 되었다.

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19년 5월부터 리걸클리닉을 확대 개편한 공익법률센터를 개소하여 임상법학 및 공익법무실습, 프로보노, 공익 진로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서부터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변호사를 자신의 진로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sup>133)</sup>

---

133) 황승흠, “한국 공익법운동의 개념요소와 전망”,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5권 제1호, (2014), 23.

## VII. 결론 및 제언

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가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sup>134)</sup> 이 연구에서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에 관하여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를 알아보는 조사에 집중하였다. 예비 법조인이 공익 진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남겨, 이후 각 공익 진로별 매뉴얼 개발에 있어 참고가 되는 밑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이자 한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익 진로 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며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향후 연구과제 혹은 제안과제로 남겨둔다

나. 이번 연구에 있어 실태조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공익적 법조 진로를 고민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실제 일을 하게 될 공익 진로 현장에 대하여 궁금한 정보가 무엇인지, 공익 진로로 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진입장벽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 예비 법조인 당사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공익 진로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 연구는 이와 같이 예비 법조인의 다양한 공익 진로에 관한 욕구를 확인하되,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공익적 진로에 진입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익 진로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예비 법조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공익 진로 매뉴얼 내지 가이드 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예비 법조인은 대부분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무수습에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공익 진로 관련 정보에 접근성이 좋은 집단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3명 중 28명(84.8%)이나 공익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분명히 드러내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익 진로 관련 질문에 충실하고 풍부하게 응답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전체 예비 법조인 집단의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도 있다.

2019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사단법인 두루가 수행한 ‘한국 공익변호사

---

134) Yale Law School, 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Law

실태조사'에서는 전·현직 공익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시했지만, 막상 공익변호사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하지 않는 예비 법조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예비 법조인의 공익 진로에 관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만, 여전히 분석 대상의 숫자가 적어 과대대표될 가능성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예비 법조인의 욕구에 응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좀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긴 호흡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및 공익 진로 배경에 관한 내용, 두 번째 부분은 공익 진로 관련 정보에 관한 현재를 진단하는 내용, 세 번째 부분은 향후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질문했다.

우선 공익 진로 배경과 관련해, 공익변호사단체 등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이 공익 진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신입변호사의 경우 (비록 분석 대상의 숫자가 적지만) 대부분 공익단체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실무수습 경험이 공익 진로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을 좀 더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예비 법조인과 신입변호사 모두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무수습'을 많이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익 진로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현장을 경험하면서 공익 진로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실무수습이 제한된 소수의 인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을 위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신입변호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작용했던 요소 중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실무수습 등 사전경험'이 60%(6명)로 가장 많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예비 법조인과 신입변호사는 공익 진로 관련 정보의 경우 파편적, 단편적, 추상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데 관련 정보(매뉴얼 등)는 매우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답했다. 공익 진로 관련 매뉴얼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공익 진로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면 공익 진로에 대한 막연하고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공익 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잡아 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궁금한 것, 즉 향후 공익 진로 매뉴얼 등에 담아야 할 항목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모두 예비 법조인은 ‘급여의 정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반면, 신입 변호사의 경우 급여의 정도가 아닌 구체적인 활동방식과 활동영역 등 다양한 항목들을 지적한 차이를 마주할 수 있었다. 막상 공익 진로를 선택한 공익변호사에게는 ‘급여의 정도’가 공익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재미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경향은 2019 실태조사 및 미국의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19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 소속 단체에서의 지속 근무 희망 여부 응답을 현재 급여 수준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현 단체의 근무를 지속하고 싶은 희망 여부에서 급여 ‘200만원 미만’ 및 ‘5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저임금일수록 단체 근무 지속 의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9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급여 수준과 단체의 지속 근무 희망 의사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찾지 못했다.<sup>135)</sup> 이와 관련하여 미국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스탠포드 로스쿨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공익변호사들의 급여도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는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낮은 급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단체 상근자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희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직군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채용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급여 인상 폭이 낮기 때문에 연차가 오래될수록 이탈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공익변호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공익변호사 단체는 젊은 변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국의 낮은 연차 변호사들이 진입 시에 급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136)</sup> 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한국에도 오랜 연차를 쌓은 변호사가 증가한다면 이탈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위 지속근무희망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공익변호사 단체의 지속가능성과 관계가 깊다.<sup>137)</sup>

이번 연구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오히려 신입변호사들이 공익 진로의 구체적인 활

135) 위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100-101.

136) 위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86쪽 [표 57] 공익전업변호사 가장 힘든 점 참조

137) 위 한국공익변호사 실태조사, 166쪽

동방식과 활동영역이 예비법조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응답하였다는 부분이다. 현장에 뛰어들어 공익변호사의 경우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는 지에 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예비 법조인이 급여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항목이 ‘활동방식’ 이었는데, ‘활동방식’ 을 통해 ‘공익 진로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 이라는 항목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항목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공익인권활동을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모델 또한 포함한 다양한 공익 진로가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 이러한 민간 공익로펌·법률사무소(영리 혹은 수익 모델)은 VI.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신입변호사는 막상 공익 현장에 뛰어들어보니 단순히 법률지원활동 이외에도 국제연대활동이나 캠페인, 모금(펀딩)활동과 같은 행정업무 등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매뉴얼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익 진로 모색을 위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2019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와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기금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욕구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예비 법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공익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관련 기금이나 학비탕감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공익 진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도 ‘경제적 문제 해결(로스쿨 학자금 등)’ 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대부분 비영리단체가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적으로 이러한 공익 진로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V장에서 미국 로스쿨의 학자금 상환 지원 양성제도 등을, VI.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공익 진로 관련 기금 현황을 제시하였고 우리도 이를 참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인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선배 변호사 그룹으로서,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인권을 실현하는 촉진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2019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의 경우 공익변호사 로스쿨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

리걸클리닉과 공익법률 커리큘럼 강화, 공익변호사 연구 협력 등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나 졸업 후 공익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예비 법조인은, 공익인권을 특성화한 학교의 경우에는 과연 특성화에 따른 공익인권 관련 교육·훈련이 잘 제공되고 있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공익인권 특성화의 기능을 회복(내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익인권 관련 과목이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이러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인권을 특성화하지 않더라도 예비 법조인라면 누구나 공익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원을 배치하거나 각 학교의 환경과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익인권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예비 법조인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비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 진로 관련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공익 관련 수업과 같이 학교를 통해 공익 진로 관련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24.2%(8명, 전체 33명)에 그쳤고, 심층면접조사 과정에서 공익인권을 특성화한 학교(지역)임에도 학교에서 공익인권 관련 경험을 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여러 참여자가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기반 공익법률활동 활성화 과제가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점이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연구와 동일하게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신입변호사의 경우 지방에 위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여럿 확인되었다. 2019년 연구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는 광주가 유일하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예비 법조인이 많이 우려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현재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는, 하고 싶은 일과 보람,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신뢰라고 답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

공익 진로 관련 출처와 관련해서는, 공익 진로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예비 법조인의 경우 ‘온라인 리서치’와 같이 다소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이미 공익 진로에 진입한 신입변호사의 경우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습득한 통로로 ‘가족,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지인’이 90%(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공익 진로를 모색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법조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서, 더 많은 예비 법조인이 공익 진로를 꿈꾸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한 답변 또한 많았다. 이때의 ‘네트워킹’은 같은 공익적 진로를 꿈꾸는 동료와의 소통이자 선배 법률가, 현장단체와의 소통을 의미하기도 했다. 공익 진로 정보 매뉴얼을 개발하더라도 그 정보와 매뉴얼을 잘 전달하고 소통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대목이기도 하다.

라. 한국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200년 이상의 로스쿨 역사를 가진 미국에 비해 공익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미국과 형태와 지원의 정도는 다르나,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시초가 된 공익변호사 급여 지원 제도, 로펌이 후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펠로우십 제도 및 로펌들의 공익인권 공모 사업, 변호사협회 차원의 공익변호사 지원(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로스쿨 차원의 펠로우십 제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펠로우 변호사 지원) 등 한국의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변호사의 양성·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들을 충분하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다양한 경험과 제도를 갖춘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급여의 수준을 높여서 공익변호사들의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공익진로로 진입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익진로로 진입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유는 각 기관/단체마다 그 변호사를 채용할 인건비를 마련하기가 힘든데, 막상 공익변호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곳은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학비 탕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하여 급여와 상관관계를 가진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로스쿨 학생들 역시 비싼 학비와 학자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졸업 후 바로 공익 진로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공익변호사의 지원과 양성을 위하여 연방 및 주 정부부터 학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특히 연방 차원에서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학자금 지원의 폭을 넓히고 특히 공익 분야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남은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 진로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연방의 프로그램 외에도 로스쿨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학자금 상환을 지원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상환 지원 외에도 졸업 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펠로우십 제도도 다양하다. 로펌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제공하는 펠로우십(스캐든 펠로우십),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펠로우십(EJW 펠로우십),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펠로우십(Immigrant Justice Corps 펠로우십, Justice Catalyst Fellowship 등), 그리고 로스쿨에서 자·타교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교내 펠로우십 등 펠로우십의 재원과 형태는 다양하며, 따라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할 의지가 있다면 졸업 후 1~2년간은 활동비의 걱정없이 공익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펠로우십 제도가 대부분 활동기한의 제한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수혜자의 8~90%가 활동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만큼 그 차이를 잘 분석하여 한국의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익 단체의 채용 정보와 관련해서는 로스쿨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주요 로스쿨은 공익 진로를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공익 진로 설계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공익 진로 매뉴얼을 제공하여 정부, 시민사회, 민간 공익 법률사무소, 국제기구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며 교수 및 졸업생 멘토가 재학생에게 공익 진로에 대해 자문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공익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그 외에도 로스쿨, 지역사회, 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공익 커리어 페어에 참가하여 졸업 전에 변호사의 공익 활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국제기구들이 많은 미국의 동부와 인구가 많아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익 활동의 기회가 적은 미국 중부에서는 별도의 공익 커리어 콘퍼런스인 Midwest Public Interest Law Career Conference(MPILCC)를 운영하며 이 지역 학생들의 공익활동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역시 수도권 외 지역의 공익변호사 지원이 특히 미흡한 한국에서 참고할 만하다.

마. ‘VI.한국 공익 진로 현황 및 진로 개발 관련 프로그램’ 항에서 한국 공익진로의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공익진로의 모습들을 ① 비영리단체 소속 변호사/다양한 비영리 공익기관, ② 법령 등 위탁 단체, ③ 영리와 공익 병행 모델(영리/수익 모델)과 노동조합 변호사, ④ 국선변호사, ⑤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으로 유형화해보고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시대마다 바뀌는 목소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 문제가 되지 못한 문제들을 계속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경우는 비영리 전업 상근변호사로, 어떤 경우는 법령 등에 위탁된 옹호기관 등으로, 어떤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개업하고 사람을 모아 연대하여, 어떤 경우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법정에서 홀로 외로운 피고인의 최후의 편이 되기 위해 국선변호인으로, 법률접근권이 닿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률홈닥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 진로 변호사들의 모습을 담았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던 공익 진로의 여러 유형들과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나아가는지 흐름을 읽고 예비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꿈을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밑자료가 되길 바란다.

공익 진로가 다변화 된 것 이외에 공익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2011년 희망펀드 등을 시작으로 한 동료 변호사들의 펀드레이징 움직임, 2014년 나우-공감 자립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등의 공익펠로우 양성 사업, 공익연구 활동 자체를 위한 공모전 이외에 인권법학회연합 등을 통한 예비 법조인 스스로의 연대 활동, 여러 기관의 실무수습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공익 진로 개발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단체 실무수습과 공익활동 공모전 등이 있고, 졸업 후 경제적인 문제로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공익 진로 관련 펀딩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공익활동의 경험을 통해 폭넓은 공익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단체 실무수습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선결 조건인 만큼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펀딩은 활동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공익변호사들에게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공익변호사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큰 반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익 진로 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며,<sup>138)</sup> 학생들은 이러한 지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외부의 공익단체 실무수습과 펀딩 등의 프로그램 이외에 교육과정에서 공익 관련 수업 과목의 개설, 임상법학을 통한 공익소송 참여, 공익 진로 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법학전문대학원이 공익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

13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19년 5월부터 리걸클리닉을 확대 개편한 공익법률센터를 개소하여 임상법학 및 공익법무실습, 프로보노, 공익 진로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서부터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변호사를 자신의 진로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바. 반복하여 말한 것처럼 공익 진로의 활동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정형화될 수 없다. 법률 관련 대응만 놓고 보더라도, 당사자들(다수인가 각 한명인가), 권리옹호 유형(소송 중심인가, 공동체 중심 법률교육인가, 입법운동인가 아니면 혼합형인가), 그리고 위치(보복 없이 공개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분야마다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활동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요구하는 역량도 다르다. 현장활동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집행부(headquarters)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활동가가 되어야 할 수도 있고 연구자가 되어야 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싸워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입법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공익변호사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경우의 한 중간에 안정된, 매뉴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경우는 없다.

공익 진로에 있어 어떤 것도 정형적인 길은 없으며, 각 분야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도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계획은 환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안정된 날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공통된 역량을 굳이 뽑으려면,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 소통하는 능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력, 두렵지만 한 발 나아가 대면하는 능력 정도가 아닐까. 그러나 이것 역시 개인적인일 뿐 공통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각 영역마다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선배 공익변호사들이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보를 마련해주는 것과 별개로, 예비 법조인 각자가 스스로에게 시선을 돌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강의나 실무수습 등을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걱정이 된다’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를 접한다.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질문도 밖이 아니라 자신(안)에게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업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 ‘왜 하고 싶은가’, ‘칭찬받고 싶어서 하고 싶은가 아니면 신나는 일이라서 해보고 싶은가’, ‘5년 후 10년 후 어떤 법조인으로 살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내리고 선택하고 감당하는 것이다.

공익 진로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멋지고 신나고 변호사 자격증을 걸고 해볼만한 일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거다 싶은 확실한 전망이나 예측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 연구는 그저 예비 법조인들이 그 질문에 대한 자기 안의 답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조언의 시작임을 밝히며 보고서를 마친다.

## 참고문헌

### <국내 자료>

- 공익법조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공익변호활동보고서
- 공익법조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2020 공익변호활동보고서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사단법인 두루,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2019).
- 김주영,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 서울대학교 『공익과인권』 통권 제20호, (2020)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지원센터설립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 (2012).
- 차병직,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의 근거와 범위-왜 가끔 착한 사마리아 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2008).
- 최송화, 공익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황승흠,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 조영래 변호사 8주기 추모 심포지엄 자료집 (미간행), (1998).
- 황승흠, “한국 공익법운동의 개념요소와 전망”,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5권 제1호, (2014).
- 2016. 제3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자료집, 김준우 발제

### <해외 자료>

- 2013 by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Private Public Interest and Plaintiffs’ Firm Guide, OPIA · CPIL (2013).
- Bernard Koteen Office of Public Interest Advising (OPIA), <https://hls.harvard.edu/dept/opia/>
- Career Development Office,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
- Center for Public Interest Law, <https://www.law.columbia.edu/academics/public-interest>
- Equal Justice Works, <https://www.equaljusticeworks.org/>
- Equal Justice Works 2020 Conference and Career Fair, <https://www.equaljusticeworks.org/conference-and-career-fair/about/>
- “Guide to Careers in Public Interest Law“,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Career Planning Center,

- <https://law.marquette.edu/assets/career-planning/pdf/Public-Interest-Guide.pdf>
- Harvard Law School, “Handbook of Academic Policies 2020-2021” .
  - “History and Mission” , OPIA, <https://hls.harvard.edu/dept/opia/about/our-goals/>
  - Immigrant Justice Corps, <https://justicecorps.org/justice-fellowship/>
  - John and Terry Levin Center for Public Services and Public Interest Law, <https://law.stanford.edu/levin-center>
  - “Job Search Toolkit” , OPIA, <https://hls.harvard.edu/dept/opia/job-search-toolkit/>
  - MPILCC, <http://www.mpilcc.org/>
  - Skadden Fellowship, <https://www.skaddenfellowships.org/>
  -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 Columbia Law School, <https://www.law.columbia.edu/areas-of-study/social-justice-and-human-rights>
  - “Public Interest Career Advising & Guides” , UCLA Law School, <https://law.ucla.edu/life-ucla-law/careers/office-public-interest-programs/public-interest-career-advising-guides>
  - “Public Interest Employers” , Yale Law School, <https://law.yale.edu/studying-law-yale/areas-interest/public-interest-law/about-public-interest-law/public-interest-career-services/public-interest-employers>
  - “Public Interest Job Search Toolkit” , Social Justice Initiatives Columbia Law School, <https://www.law.columbia.edu/sites/default/files/2020-09/JobSearchToolkit2020.pdf>
  - Public Interest Lawyer Salary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salary.com/research/salary/posting/public-interest-lawyer-salary>
  - “Public Interest Mentoring Program” , SLS, <https://law.stanford.edu/levin-center/mentoring-program/>
  - “Public Service Practice Settings” , OPIA, <https://hls.harvard.edu/dept/opia/what-is-public-interest-law/public-service-practice-settings>
  - Deborah L. Rhode, “Public Interest Law: The Movement at Midlife”, Stanford Law Review Volume 60, Issue 6, 2008.

< 참고한 한국 공익 진로 관련 홈페이지 >

감사와 동행	<a href="http://www.gamdonglove.org">www.gamdonglove.org</a>
경기장애인인권센터	<a href="http://www.xn--zf0bw56b7oba6t.com/">www.xn--zf0bw56b7oba6t.com/</a>
공익법센터 어필	<a href="http://www.apil.or.kr">www.apil.or.kr</a>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a href="http://www.companion-1fpi.org">www.companion-1fpi.org</a>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a href="http://www.kpil.org/">www.kpil.org/</a>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a href="http://www.hopeandlaw.org/">www.hopeandlaw.org/</a>
국제아동인권센터	<a href="http://www.incrc.org/?page_id=854">www.incrc.org/?page_id=854</a>
난민인권센터	<a href="http://www.nancen.org">www.nancen.org</a>
녹색법률센터	<a href="http://www.greenlaw.or.kr">www.greenlaw.or.kr</a>
동물권단체 케어	<a href="http://www.fromcare.org">www.fromcare.org</a>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a href="https://www.facebook.com/kctulaw">https://www.facebook.com/kctulaw</a> 페이스북 페이지@kctulaw <a href="http://www.nodong.org">www.nodong.org</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올림	<a href="http://www.minbyun.org">www.minbyun.org</a> <a href="http://cafe354.daum.net/_c21_/home?grpId=1C6KM">cafe354.daum.net/_c21_/home?grpId=1C6KM</a>
법무법인 더함	<a href="http://www.selaw.co.kr">www.selaw.co.kr</a>
법조공익모임 나우	<a href="http://www.now.or.kr">www.now.or.kr</a>
사교육걱정없는세상	<a href="http://news.noworry.kr/1221">news.noworry.kr/1221</a>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a href="http://www.shinkim.or.kr/">www.shinkim.or.kr/</a>
사단법인 두루	<a href="http://www.duroo.org">www.duroo.org</a>
사단법인 선	<a href="http://seon.df-host.co.kr">seon.df-host.co.kr</a>
사단법인 오픈넷	<a href="http://www.opennet.or.kr">www.opennet.or.kr</a>
사단법인 온을	<a href="http://www.onyul.or.kr">www.onyul.or.kr</a>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a href="http://swlc.welfare.seoul.kr/swlc/index.action">swlc.welfare.seoul.kr/swlc/index.action</a>
서울장애인인권센터	<a href="http://www.16440420.seoul.kr">www.16440420.seoul.kr</a>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a href="http://probono.seoulbar.or.kr">probono.seoulbar.or.kr</a>
이주민센터 친구	<a href="http://www.chingune.or.kr">www.chingune.or.kr</a>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a href="http://www.gamdonglove.org">www.gamdonglove.org</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 href="http://www.cowalk.or.kr">www.cowalk.or.kr</a>
재단법인 동천	<a href="http://www.bkl.or.kr">www.bkl.or.kr</a>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a href="http://hwww.hwawoo.or.kr">hwww.hwawoo.or.kr</a>
참여연대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ww.peoplepower21.org</a>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a href="http://www.ddingdong.kr">www.ddingdong.kr</a>
청주노동인권센터	<a href="http://www.cjnodong.com">www.cjnodong.com</a>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a href="http://www.consumer.or.kr">www.consumer.or.kr</a>
환경법률센터	<a href="http://www.ecolaw.or.kr/wp/">www.ecolaw.or.kr/wp/</a>

## 별첨자료

## [별첨자료 1]

### ‘공익적 법조 진로’ 관련 설문조사 (예비 법조인 대상)

본 설문지는 “예비 법조인” 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입니다.

#### 본 설문조사의 취지

2019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익전업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 및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법조공익모임 나누는 2019년부터 공익변호사들의 공익변호활동을 알리기 위해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공익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익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졸업 후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만들어진 바 없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 연구(가칭)>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것이며, 본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적 법조 진로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서의 ‘공익적 법조 진로’ 또는 ‘공익 진로’**란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의미하며, 공익전업변호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익로펌 및 영리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검찰을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법조인이 할 수 있는 분야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 인적사항 관련

1번 ~ 4번 문항의 인적사항(개인정보)은 조사담당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추가 인터뷰 및 선물(커피 쿠폰) 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1번 ~ 4번 문항의 작성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께 선물(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2021년 2월 예정). 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1. 성명	
2. 소속	
3. 휴대전화번호	
4. 이메일	

\*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V로 표시해주세요.

5.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이상

6. 현재 거주 지역은?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충청도
- ④ 전라도
- ⑤ 강원도
- ⑥ 경상도
- ⑦ 제주도

7. 로스쿨 졸업 이후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은? (중복 응답 가능)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충청도
- ④ 전라도
- ⑤ 강원도
- ⑥ 경상도
- ⑦ 제주도
- ⑧ 해외
- ⑨ 상관없음

8. 공익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 ① 아니다.
- ② 약간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9. 로스쿨 입학 전 공익 진로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떠한 경로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중복 응답 가능)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공익 관련 기관(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의 활동
- ② 공익변호사단체에서의 활동
- ③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 ④ 공익 관련 수업 수강
- ⑤ 공익 관련 강연 또는 프로그램 참여
- ⑥ 공익 관련 기사, 책 등
- ⑦ 기타 ( )

10. 공익 진로로 가기 위해 로스쿨 재학 중 어떤 활동을 했는가 (또는 하고 있는가)? (중복 응답 가능)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공익 관련 기관(공익변호사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의 실무수습
- ②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 ③ 공익 관련 수업 수강
- ④ 공익 관련 강연 또는 프로그램 참여
- ⑤ 기타 ( )

11-1. 공익 진로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얻었는가? (중복 응답 가능)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 ② 공익 관련 수업 또는 프로그램
- ③ 가족,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지인
- ④ 온라인 리서치 등
- ⑤ 기타 ( )

11-2.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 )

11-3.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또는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11-4.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관련 수업 또는 강연, 실무수습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12. 활동하고 싶은 공익 분야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 )

**13-1. 공익 진로에 대하여 1순위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13-1, 13-2, 13-3번 문항은 동일하며 1, 2, 3순위를 각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① 급여 조건
- ② 단체의 활동영역 (장애, 아동, 청소년, 젠더, 이주, 난민, 노동, 환경 등)
- ③ 단체의 활동방식 (소송, 입법운동, 연구조사, 국제인권기구 대응활동 등)
- ④ 단체 현황과 업무방식 (역사, 상근변호사 유무, 다른 단체와의 협업·네트워킹 등)
- ⑤ 단체 운영을 위한 자원조달방식 (후원모델, 영리활동 병행 등 여부)
- ⑥ 근무조건과 환경 (야근 횟수 등 업무 강도, 복지 혜택 등)
- ⑦ 단체의 조직 문화
- ⑧ 단체의 영향력과 평판
- ⑨ 단체가 필요로 하는 상근변호사의 중요 역량·자질·능력 등
- ⑩ 상근변호사 채용시기 (상시채용·특별채용 여부 등)
- ⑪ 기타 ( )

**13-2. 공익 진로에 대하여 2순위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13-1, 13-2, 13-3번 문항은 동일하며 1, 2, 3순위를 각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① 급여 조건
- ② 단체의 활동영역 (장애, 아동, 청소년, 여성, 이주, 난민, 노동, 환경 등)
- ③ 단체의 활동방식 (소송, 입법운동, 연구조사, 국제인권기구 대응활동 등)
- ④ 단체 현황과 업무방식 (역사, 상근변호사 유무, 다른 단체와의 협업·네트워킹 등)
- ⑤ 단체 운영을 위한 자원조달방식 (후원모델, 영리활동 병행 등 여부)
- ⑥ 근무조건과 환경 (야근 횟수 등 업무 강도, 복지 혜택 등)
- ⑦ 단체의 조직 문화
- ⑧ 단체의 영향력과 평판
- ⑨ 단체가 필요로 하는 상근변호사의 중요 역량·자질·능력 등

- ⑩ 상근변호사 채용시기 (상시채용 · 특별채용 여부 등)
- ⑪ 기타 ( )

**13-3. 공익 진로에 대하여 3순위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13-1, 13-2, 13-3번 문항은 동일하며 1, 2, 3순위를 각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① 급여 조건
- ② 단체의 활동영역 (장애, 아동, 청소년, 여성, 이주, 난민, 노동, 환경 등)
- ③ 단체의 활동방식 (소송, 입법운동, 연구조사, 국제인권기구 대응활동 등)
- ④ 단체 현황과 업무방식 (역사, 상근변호사 유무, 다른 단체와의 협업 · 네트워킹 등)
- ⑤ 단체 운영을 위한 자원조달방식 (후원모델, 영리활동 병행 등 여부)
- ⑥ 근무조건과 환경 (야근 횟수 등 업무 강도, 복지 혜택 등)
- ⑦ 단체의 조직 문화
- ⑧ 단체의 영향력과 평판
- ⑨ 단체가 필요로 하는 상근변호사의 중요 역량 · 자질 · 능력 등
- ⑩ 상근변호사 채용시기 (상시채용 · 특별채용 여부 등)
- ⑪ 기타 ( )

**14.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관심 있는 분야의 법조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음에도 공익 진로가 망설여진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 )

**15. 공익 진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해결하거나 공익 진로로 가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3가지)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경제적 문제 해결 (로스쿨 학자금, 급여 안정성 등)
- ②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혹은 매뉴얼
- ③ 로스쿨 재학 중 공익 진로와 관련 있는 정기적인 네트워킹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등)
- ④ 공익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⑤ 공익단체의 정기적인 채용 기회 및 채용 정보의 제공

⑥ 기타 (                      )

[별첨자료 2]

**‘공익적 법조 진로’ 관련 설문조사 (신입 변호사 대상)**

본 설문지는 “(경력 3년 미만의) 신입 변호사” 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취지**

2019년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익전업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 및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법조공익모임 나누는 2019년부터 공익변호사들의 공익변호활동을 알리기 위해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공익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익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졸업 후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만들어진 바 없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 연구(가칭)>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것이며, 본 설문조사를 통해 공익적 법조 진로 모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서의 ‘공익적 법조 진로’ 또는 ‘공익 진로’**란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의미하며, 공익전업변호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익로펌 및 영리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검찰을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법조인이 할 수 있는 분야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관련**

1번 ~ 4번 문항의 인적사항(개인정보)은 조사담당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추가 인터뷰 및 선물(커피 쿠폰) 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1번 ~ 4번 문항의 작성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께 선물(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2021년 2월 예정). 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1. 성명	
2. 소속	
3. 휴대전화번호	
4. 이메일	

\*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V로 표시해주세요.

5.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이상

6. 졸업한 로스쿨이 위치한 지역은?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충청도
- ④ 전라도
- ⑤ 강원도
- ⑥ 경상도
- ⑦ 제주도
- ⑧ 해외

7.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충청도
- ④ 전라도
- ⑤ 강원도
- ⑥ 경상도
- ⑦ 제주도
- ⑧ 해외

8. 현재 상근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활동기간은?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3년 미만

9. 변호사 경력기간은?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3년 미만
- ④ 기타 ( )

10. 로스쿨 입학 전 공익 진로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떠한 경로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중복 응답 가능)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공익 관련 기관(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의 활동
- ② 공익변호사단체에서의 활동
- ③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 ④ 공익 관련 수업 수강
- ⑤ 공익 관련 강연 또는 프로그램 참여
- ⑥ 공익 관련 기사, 책 등

⑦ 기타 ( )

11. 공익 진로로 가기 위해 로스쿨 재학 중 어떤 활동을 했는가? (중복 응답 가능)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공익 관련 기관(공익변호사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의 실무수습
- ②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 ③ 공익 관련 수업 수강
- ④ 공익 관련 강연 또는 프로그램 참여
- ⑤ 기타 ( )

12-1. 공익 진로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얻었는가? (중복 응답 가능)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공익 관련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 ② 공익 관련 수업 또는 프로그램
- ③ 가족,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지인
- ④ 온라인 리서치 등
- ⑤ 기타 ( )

12-2.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 )

12-3.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또는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12-4.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관련 수업  
또는 강연, 실무수습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13-1. 현재 상근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중복 응답 가능)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로스쿨 재학 중) 실무수습 경험
- ② 실무수습 이외의 자원활동, 인턴 경험
- ③ 채용 공고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홈페이지 등)
- ④ 주변 추천 (선배, 지인 등)
- ⑤ 기타 ( )

13-2. 현재 상근하고 있는 조직을 선택할 때 가장 망설였던 점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13-3. 현재 상근하고 있는 조직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무엇인가? (3가지)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사전 경험 (실무수습 등)
- ② 급여의 정도
- ③ 조직의 활동영역 (장애, 아동, 청소년, 여성, 이주, 난민, 노동, 환경 등)
- ③ 조직의 활동방식 (소송, 입법운동, 연구조사, 국제인권기구 대응활동 등)
- ④ 조직 현황과 업무방식 (역사, 상근변호사 유무, 다른 단체와의 협업·네트워킹 등)
- ⑤ 조직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식 (후원모델, 영리활동 병행 등 여부)
- ⑥ 근무조건과 환경 (야근 횟수 등 업무 강도, 복지 혜택 등)
- ⑦ 조직의 문화
- ⑧ 조직의 영향력과 평판
- ⑨ 기타 ( )

14-1. 신입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일하는 속도, 법률문서작성 등)을 제외

하고 공익 영역에서 일하는 신입 변호사로서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 )

14-2. 처음 예상했던 것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 )

14-3. 예상했던 것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 )

15. 공익변호사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가지)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
- ② 네트워킹 기획력
- ③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 ④ 기타 ( )

16. 공익적 배경이 없더라도 공익 진로 매뉴얼이 있다면 공익 진로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

17. 공익 진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가지) (기타 선택 시, 자세하게 기재 요망)

- ① 급여 조건
- ② 단체의 활동영역 (장애, 아동, 청소년, 젠더, 이주, 난민, 노동, 환경 등)
- ③ 단체의 활동방식 (소송, 입법운동, 연구조사, 국제인권기구 대응활동 등)

- ④ 단체 현황과 업무방식 (역사, 상근변호사 유무, 다른 단체와의 협업·네트워킹 등)
- ⑤ 단체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식 (후원모델, 영리활동 병행 등 여부)
- ⑥ 근무조건과 환경 (야근 횟수 등 업무 강도, 복지 혜택 등)
- ⑦ 단체의 조직 문화
- ⑧ 단체의 영향력과 평판
- ⑨ 단체가 필요로 하는 상근변호사의 중요 역량·자질·능력 등
- ⑩ 상근변호사 채용시기 (상시채용·특별채용 여부 등)
- ⑪ 기타 ( )

[별첨자료3]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예비 법조인)

(배경)

1. 실무수습,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함께하게 되었는지.
2. 로스쿨 입학 전 공익 진로에 관심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떠한 경로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학부? 경력?)
3. 로스쿨 재학 중에는 공익 진로 관련 어떤 활동을 하고 있거나 했는지.
4. 현재 공익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주요질문)

5. (공익 진로와 관련 정보의 관계성) 공익 진로를 모색하는데, 관련 정보가 필요할 지. 이러한 정보들이 공익 진로로 가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지.
6.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얻었다면 어디에서 얻었는지.
  - 6-1.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공익변호사를 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부족하거나 아쉬웠는지)
  - 6-2.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좋았던 혹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지. (공익 진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던 자료?)
  - 6-3. 공익 진로에 관심이 있음에도 관련 활동(학회, 관련 수업, 실무수습 등) 참여를 못했다면 그 이유는 (나 혹은 다른 재학생도 오케이)
7. 공익 진로 관련해서 궁금한 것; <공익 진로매뉴얼 혹은 가이드>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1순위, 2순위, 3순위)

(예시)

- ① 급여 조건

- ② 단체의 활동영역 (장애, 아동, 청소년, 젠더, 이주, 난민, 노동, 환경 등)
- ③ 단체의 활동방식 (소송, 입법운동, 연구조사, 국제인권기구 대응활동 등)
- ④ 단체 현황과 업무방식 (역사, 상근변호사 유무, 다른 단체와의 협업·네트워킹 등)
- ⑤ 단체 운영을 위한 자원조달방식 (후원모델, 영리활동 병행 등 여부)
- ⑥ 근무조건과 환경 (야근 횟수 등 업무 강도, 복지 혜택 등)
- ⑦ 단체의 조직 문화
- ⑧ 단체의 영향력과 평판
- ⑨ 단체가 필요로 하는 상근변호사의 중요 역량·자질·능력 등
- ⑩ 상근변호사 채용시기 (상시채용·특별채용 여부 등)
- ⑪ 기타 ( )

8. 공익 진로 관련 정보도 알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음에도 공익 진로가 망설여진다면 그 요인은 무엇일지.

9. 공익 진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해결하거나 공익 진로로 가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예시)

- ① 경제적 문제 해결 (로스쿨 학자금, 급여 안정성 등)
- ② 공익 진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혹은 매뉴얼
- ③ 로스쿨 재학 중 공익 진로와 관련 있는 정기적인 네트워킹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등)
- ④ 공익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 ⑤ 공익단체의 정기적인 채용 기회 및 채용 정보의 제공
- ⑥ 기타 ( )

(개인에 대한 질문)

10. 혹시 활동하고 싶은 공익분야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마무리)

11. 연구진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